

---

- 창의·협력 기반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  
2015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



# • 목 차 •

---

## 제1부 제주도민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제1장 계획의 배경과 요건	3
1. 계획의 중요성	3
2. 계획의 주요 환경 분석	8
3. 계획의 시사점	23
제2장 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	25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25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 영역	27
3. 제주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	39

## 제2부 2015년 영역별 시행계획

제1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43
제2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87
제3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131
제4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183

## 부 록

<부록 1> 평생교육법	225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240

## • 표 목차 •

---

[표 1] 지식기반사회로서의 이행에 따른 학습 패러다임 변화 .....	4
[표 2] 민선 6기 제주도정의 교육분야 주요 공약 .....	7
[표 3] 국가단위 평생학습기관별 주요기능 및 역할 .....	12
[표 4]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	12
[표 5] 자치단체광역의 평생학습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역할 .....	13
[표 6] 기초자치단체 평생학습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역할 .....	14
[표 7]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체계 .....	15
[표 8]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의 특징 .....	16
[표 9] 제주지역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 현황 .....	18
[표 10] 2011년 제주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 .....	19
[표 11] 2012년 제주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 .....	19
[표 12]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사무직원 주요현황 .....	21
[표 13] 전국 평생교육기관별 참여프로그램 유형(비형식교육 중심) ...	21

## • 그림 목차 •

---

[그림 1] 주요 국가별 행복지수 및 우리나라 삶의 영역별 행복정도 (2013, OECO) .....	5
[그림 2] 한국의 신뢰도 추이 .....	6
[그림 3] 평생교육법 개정의 배경 .....	9
[그림 4]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	16
[그림 5]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 .....	17
[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목표 및 추진과제 .....	26
[그림 7] 2015년 제주지역 부문별 사업총괄 현황 .....	27
[그림 8] 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 6진 분류체계에 따른 사업총괄 현황 ...	28

# 제 1 부

---

##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평생학습 가치 증대

- 제 1 장 계획의 배경과 요건
  - 제 2 장 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
-



## 제 1 장 계획의 배경과 요건

### 1. 계획의 필요성

#### 1-1.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과 연계한 제주지역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년~2017년)』 이 확정·발표(2013. 9. 13) 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연계된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평생학습의 고도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함.
  -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는 2008년 3월 『제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8년~2012년)』 을 수립했음. 이에 맞춰 2009년 이 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제주지역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발전계획(2010년~2012년)』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2014년~2017년)』 을 수립해서 진행해 오고 있음.
  -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거, 중앙정부의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년~2017년)』 수립에 따라 제주지역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 ▶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생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변영,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창조경제시대 진입’을 위해 능력 중심 사회를 이끄는 유연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 주요 추진영역은 ①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②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③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④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4대 영역, 12개 부문, 2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해 중앙정부는 2017년까지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인 40.4%까지 높이고, 소득계층간 평생학습 참여 격차를 9% 미만으로 낮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sup>1)</sup>

1)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은 26.4%(’08) → 28.0%(’09) → 30.5%(’10) → 32.4%(’11) → 35.6%(’12)로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소득계층간 평생학습 참여격차는 14%(’12년)(월소득 150만원 이하 vs 500만원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30.1% vs 44.1%)로 큰 편으로 나타남.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평생학습 참여율도 9.4%(’08) → 26.1%(’12)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편임

## 1-2. 학습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조성

- 지식사회는 과거처럼 과학지식과 학술지식의 의존만으로는 불가능함. 따라서 실용 지식, 생활지식, 문화지식이 접목된 지식의 융·복합적 생성과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은 엘리트 중심의 대학과 학교 중심의 전통적 지식생성과 공유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많아 평생학습의 생활문화를 형성해 나갈 때에만 가능성이 높아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음.
  - 국제기구인 UNESCO와 OECD에서 발간된 많은 보고서는 평생학습체제(lifelong learning system)를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장 시스템(sustainable social growth system)으로 규정하고 모든 회원 국가에 권고하고 있음. 이는 교육, 노동, 복지,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융·복합형 공적 사회시스템으로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와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사회적 신성장체제이기 때문임.
    - ▶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되며, G7국가와의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적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었음.<sup>2)</sup>
- 특히,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저출산 현상까지 사회적 문제로 동시에 대두되고 있음.
  - ▶ 우리나라 고령자(55~64세)의 고용율(62.1%)은 OECD 평균(54.4%, OECD FactBook, 2013)보다 높은 편이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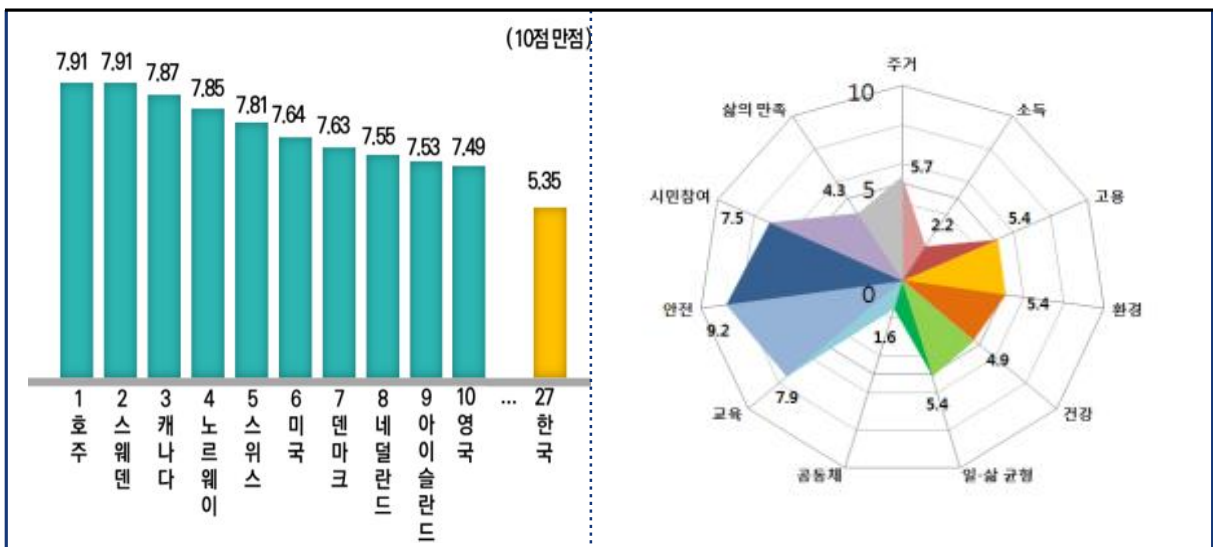
[표 1]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학습 패러다임 변화

구 분		학 력 중 심 사 회	능 력 중 심 사 회
경제환경	산 업 구 조	제조업(중화학공업) 중심	소프트화 정보서비스산업 중심
	직 무 내 용	단순 반복	복잡화·세분화·전문화
	수 요 인 력	단순기능인력	기초직업능력 다기능화·전문화
	노동시장 채용관행	종신고용 정시 채용제	노동시장 유연화로 수시 채용
사회교육 환경	학 력 변 화	저학력	고학력
	개 인 능 력 표 시	학력	학력 + 자격
	사 회 교 육	학력중심사회(정규교육 위주)	능력중심사회(평생학습의 중요성)
	훈 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2)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 한국 창조경제역량, OECD 국가 중 20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통권 531호, 2013. 3. 22)

### 1-3.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계층별 평생학습 확대

- 국민행복은 개인의 행복한 삶과 100세 시대 사회 번영을 이끄는 중요 요소로 국내총생산(GDP)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국민행복지수로 국가 수준을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sup>3)</sup>
  - 국민행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되면서(UN),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음. 따라서 100세 시대에는 국가 및 지역 발전 측면과 함께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sup>4)</sup>
  - 따라서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계층별 평생학습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인생후반기 행복한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취미생활, 여가선용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개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학습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음.



[그림 1] 주요 국가별 행복지수 및 우리나라 삶의 영역별 행복 정도(2013년, OECD)

※ 주 : 삶의 영역별 행복도는 주거, 교육, 고용, 시민참여, 삶의 만족, 일-삶 균형 관련 지표로 측정함

3) 2013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3)는 2010~2012년까지 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실제 GDP, 건강 수명, 다른사람에게 의지할 필요성, 삶의 선택에 대한 자유, 부패로부터 자유, 관용 등 6가지 항목을 토대로 조사해서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세계 평균 행복도는 5.158점이며, 한국은 행복지수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총 6.267점을 얻어 156개 국가 중 41위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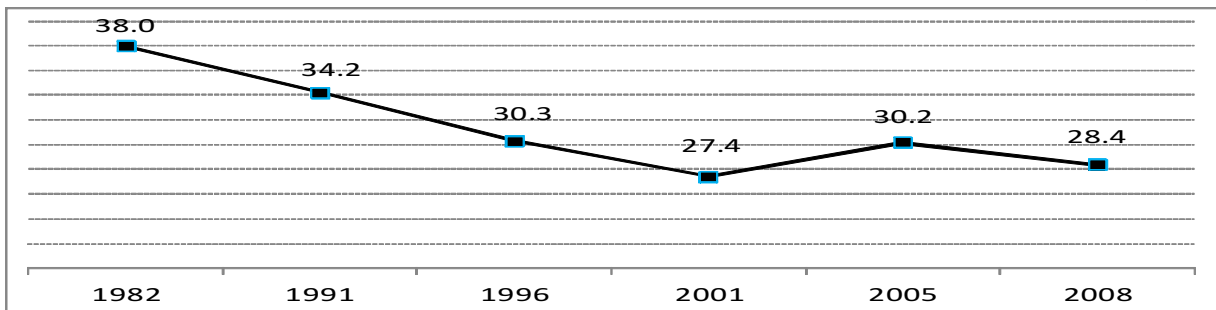
4) 이동원(2009),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SERI 경제포커스 제257호, 삼성경제연구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큰 편이나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한국사회는 소득불균형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 동일한 소득불균형 수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회에 비해 더 불행하다고 인식함. 따라서 소득불균형 완화를 단순히 빈곤해소 차원이 아닌 수직적 사회이동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계층간 갈등 감소로 사회행복을 증가시키고 사회서비스를 통해 계층 간 융화와 함께 사회적 투자의 의미가 크다고 제기하고 있음.

### 1-4. 사회갈등을 넘어 상생협력의 매개체로서 평생학습

○ 평생학습은 21세기 지역, 국가, 네트워크 사회의 ‘범용(汎用)’ 교육시스템 모델인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지향과 동시에 지역공동체가 발전과 교류의 주체이기도 함. 따라서 지역 교육력 복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공동체(community)’로서 재생시켜 나가는 기초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학습을 통해 공동 가치를 일궈 나가야 함

-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음. OECD 국가 중 소득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0.31로 세계 15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지수는 26위이며 정부효과성 지수는 18위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0.72로 터키(1.27)를 제외한 2위로(3위인 폴란드는 0.59) 이러한 갈등관리의 문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세계화 대응능력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박준,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8. 21)<sup>5)</sup>
- 또한 한국의 사회적자본 수준은 OECD 29개국 중 하위권인 22위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임. 특히 신뢰, 사회규범 및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sup>6)</sup>

(단위 : %)



[그림 2] 한국의 신뢰도 추이

※ 주 : 대부분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

자료 : World Values Survey Korea 1982~2005년 : 2008년은 WVS기준으로 삼성경제연구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 ▶ OECD, World Bank :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도구로서 평생학습 강조
- ▶ EU, ASEM : 국가 수준의 경제블록에 상응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력할 것을 권고

5) 박준외(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CEO Information 제710호, 삼성경제연구소.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나타났음. 갈등수준이 높은 주 원인은 구조적 갈등요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성숙도(27위, 관용 및 타협의 문화 미정착, 법질서 존중 의식 미흡 등)와 정부 효과성(23위, 정책의 일관성 및 정부의 조정능력, 규제수준 낮음 등) 지수가 선진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임. 또한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OECD 평균보다 높은 갈등수준으로 인해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6) 이동원외(2009),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CEO Information 제722호, 삼성경제연구소.

### 1-5. 평생학습을 통한 제주의 가치 공유 및 증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기조로 지역의 내실화 및 주민 만족형 지역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음.
  -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취업빙하기(90년대)부터 청년 일자리 형태의 임시직 고착화와 실업을 증가, 출산율 감소, 인재유출, 고학력 여성 인력의 유희화와 자영업의 폐업 증가 등 사회적으로 고질화가 이뤄지고 있음. 더불어 2004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 지역 총생산량 및 1인당 소득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어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반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민선 6기 제주도정에서는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정체성 확보 및 공동체 조성을 위해 매개체로서 교육·평생학습 공약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을 연계하고, 산·학·연·관·언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함. 또한 도민 개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학습 중요성 및 참여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자 함.
    - ▶ 세대간·지역간 사회통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글로컬리즘’과 연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 저학력 성인, 소외계층 등 일부에 국한된 정책으로 평생학습 참여 저조 한계 극복
    - ▶ 인문교양, 문화예술·스포츠 등 ‘존재를 위한 학습’에 치중을 지역주민들의 ‘참여·통합을 위한 학습’으로 전환

[표 2] 민선6기 제주도정의 교육분야 주요 공약

구 분		추진 시기
6 건		
공약 1)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자기주도 학습 지원	2015 ~ 2018
공약 2)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공약 3)	제주 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공약 4)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배치	
공약 5)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	
공약 6)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	
공약 7)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	

## 2. 계획의 주요 환경 분석

### 2-1. 평생교육 제도의 변화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기초로 하여, 1999년에 공포한 「평생교육법」<sup>7)</sup>을 토대로 진행되다가, 2007년 12월에 개정된 법률<sup>8)</sup>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하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학습강국, 인재대국의 국정 가치 구현 및 총체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준비를 통해 평생교육 진흥 및 평가인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추진 도모 및 기존의 「평생교육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을 개정함.
- 또한 2008년에 평생교육법의 입법 취지와 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평생교육 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신설된 제도의 확산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음.
- 2008년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 등 지원 추진체제 개편 및 각종 관련법의 연계 및 연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4년 현재 전국에 14개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하였음.
- (2014년 12월 말 기준)

구 분	지 역	비 고
독립형 재단	대전(2011. 7), 경기(2011. 12)	
지정/위탁형	충북(2011. 4), 부산(2011. 4), 충남(2011. 12), 제주(2012. 7), 울산(2012. 7), 인천(2013. 5), 경북(2013. 6), 광주(2013. 7), 강원(2014. 3), 전남(2014. 3), 서울(2014. 4), 대구(2014. 4),	경남(2015년 1월 예정) 전북, 세종(미정)

7)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기회균등 및 자율성 보장, 평생교육의 중립성 그리고 평생교육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내용으로는 유·무급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강사정보은행제·교육계좌제, 사내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자격조건 및 배치와 평생교육시설 등을 통해서 학점 등의 인정, 청문, 권한 위임,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8)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 자격조건 및 배치기준 강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책무 및 요건, 전문대학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학력인정 그리고 학점 등의 인정, 행정처분, 청문, 권한위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림 3] 평생교육법 개정의 배경

○ 평생교육법 연혁

<p>제5공화국 헌법 (1980. 10. 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회 제5항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조항' 명시</li> <li>▪ 제29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규정'</li> </ul>
<p>사회교육법 (1982. 12. 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1. 12. 12 구용현의원외 56인 발의로 법안 제출</li> <li>▪ 1982. 11. 26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통과</li> <li>▪ 1982. 12. 15 제114회 국회 본회의 통과</li> <li>▪ 1982. 12. 31 법률 제3648호 공포</li> </ul>
<p>사회교육법 전부개정 평생교육법 (1999. 8. 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 11. 26 정부안 확정, 국회에 법안 제출</li> <li>▪ 1999. 8. 10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li> <li>▪ 1999. 8. 12 제206회 국회 본회의 통과</li> <li>▪ 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공포(2000. 3. 1 시행) 법명변경(사회교육법 → 평생교육법)</li> </ul>
<p>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2007. 12.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 2. 21 전부개정 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li> <li>▪ 2007. 4. 09 전부개정 법률안(임해규의원 대표발의)</li> <li>▪ 2007. 4. 18 전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li> <li>▪ 2007. 11. 16 국회 교육위원회 확정 의결 통과</li> <li>▪ 2007. 11. 21 국회 법사위원회 의결 통과</li> <li>▪ 2007. 11. 22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li> <li>▪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공포(2008. 2. 15 시행)</li> </ul>
<p>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제정 및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3. 18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li> <li>▪ 2011. 1. 1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li> <li>▪ 2011. 3. 31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li> <li>▪ 2011. 8. 17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 행정시 평생학습관 설치 근거 등 마련</li> <li>▪ 2012. 12. 1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li> </ul>

## 2-2. 평생교육 관련 계획의 변화

-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2006)』의 종료와 제1차 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에 이어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2013. 9월)을 수립하였음.

구분	제1·2차 계획 추진의 성과와 한계	제3차 계획의 반영 내용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li> <li>- 종합계획을 통한 체계적 정책 추진</li> <li>- 대안적 교육기회 확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조학습사회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 단위 평생교육 추진-지원</li> <li>-전담기구 정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단위의 추진체제를 읍·면·동 단위로 확산, 주민생활권 학습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지역 평생교육 기반 조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지역 기반 조성을 위한 창조학습 공동체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평생교육으로 전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성인중심의 대학 체제 전환 유도</li> </ul>
한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교육예산 규모 대비 미약한 평생 교육 예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부처의 평생교육정책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평생 학습참여율 및 계층별 참여율 격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오프라인 통합 평생 교육 기회 제공 확대</li> <li>• 학습비 지원, 학습결과 활용기회 확대</li> <li>• 학습소외계층 맞춤형 참여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주도 하에 top-down 방식 정책 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형, 자기주도, 개방적 학습문화 조성</li> <li>•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학력 성인 등 일부 취약계층 대상 사업에 집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단계별(2030, 4050, 6070) 학습 지원 정책 다양화</li> <li>• 중소기업 재직자, 군복무자 등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프로그램과 단년도 사업 위주로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 수요변화에 대응 미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사회, 인생 100세 사회 고려, 환경 변화와 사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과제 발굴</li> </ul>

-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100세시대 창조적 평생 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① 창조학습을 주도하는 국민, ②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 ③ 함께 학습하는 지역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는 크게 4가지로 접근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로는 다음과 같음.

영역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1. 대학 중심 평생교육 체제 실현	1-1.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①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 체제 구축 ②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확대
	1-2.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① 지역공헌형 열린 대학 활성화 ②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계속교육 지원
	1-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경험학습의 학점인정 확대 ②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통한 학력- 교육훈련 - 자격 연계
2.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제 구축	2-1.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①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 ② 오프라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2-2.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①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지원 ②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기반 강화 ③ 광역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 마련
	2-3.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① 평생교육기관 인증 및 정보공시 실시 ②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 ③ 평생교육복지 연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3.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3-1.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①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② 중소기업인 생애경력 개발 지원 ③ 기업맞춤형 학습참여 기반 마련
	3-2.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① 국민 문해역량 지원 강화 ②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③ 저소득층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원
	3-3.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① 경력단절 여성의 재도약 학습 지원 ②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및 교육기회 확대 ③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계속학습 지원
4. 지역사회 학습 역량 강화	4-1.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① 학교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연계 ②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4-2.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 강화	① 지역기반 인문학 지원 강화 ②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역량 지원
	4-3.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①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②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개발 및 확산

## 2-3.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변화

### (1) 국가 단위

- 중앙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요 평생교육 정책들의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진행함.

[표 3] 국가단위 평생학습기관별 주요기능 및 역할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비 고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직업교육국에서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정책을 총괄</li> <li>○ 국가 평생교육 계획 수립,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평생교육제도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기반조성, 평생교육기관 지원 등의 업무 수행</li> </ul>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해 2008년에 설립</li> <li>○ 국가 단위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집행,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결과의 인정,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운영 등 평생교육 관련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li> </ul>	

### (2) 광역자치단체 단위

-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시·도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나,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이 함께 고려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 평생교육을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청을 협의 관련 의무를 돕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표 4]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분	시·군·구청	시·도 및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립·시행(제11조)</li> <li>-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제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의 수립·시행에 협의(제11조)</li> </ul>
행정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 요구(제13조)</li> <li>- 평생교육통계조사(제18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 또는 등록 관리(제28조~제38조)</li> <li>-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 또는 등록 취소(제42조)</li> </ul>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구성·운영(제12조)</li> <li>- 시·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장(제1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위원 구성 협의(제12조)</li> <li>- 부교육감은 당연직 부의장(제12조)</li> </ul>

구분	사·군구청	시·도 및 지역교육청
평생교육기관 지도 및 지원	- 기관 요청시 평생교육 활동 지도 또는 지원(제17조)	
평생교육사업 추진기구 운영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제20조) ·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기타 필요사항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운영(부칙 경과조치)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 평생교육 정보수집·제공 · 평생학습 상담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체제 구축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협의(「시행령」 제12조)
평생교육진흥 사업 내용	-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제16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제16조) -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시행령」 제13조)	- 좌동  - 시·도청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협의(제16조)

출처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2~2013 평생교육백서」

[표 5] 자치단체광역의 평생학습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역할

구분	주요 기능 및 역할	비고
시·도 교육청	○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로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문자해득교육,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지정·운영 등이 있음 -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의 직접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로서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단, 대학 소속 시설은 제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사항),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의 시설에 대해서 교육감은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 교육청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으로는 문자해득교육이 있음 - 현행법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지정·운영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비 고
시·도 평생교육협 의회	○ 광역시·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장과 도지사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 (「평생교육법」 제12조)	
시·도 평생교육진 흥원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도 평생 교육진흥원 설치 운영(「평생교육법」 제20조) -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 제20조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3) 기초자치단체(행정시) 단위

[표 6] 기초자치단체 평생학습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역할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비 고
시·군·구 평생교육 협의회	○ 시·군·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 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구 평생 학습관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 그램의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평생 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 ○ 「평생교육법」 상 시·도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 또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2014년 기준) * 평생학습도시 조성 129개 지정 (227개 시·군·구) * 행복학습센터 60개 지정

[ 표 7 ]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분	시·군·구청	시·도 및 지역교육청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 협의회 구성·운영(제14조) - 시·군·구 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장(제14조)	-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 가능(제14조)
평생학습도시	-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및 사업운영(제15조)	
평생교육기관 지도 및 지원	- 기관 요청시 평생교육활동 지도 또는 지원(제17조)	
시·군·구 평생학습관	- 조례제정 후 설치 또는 운영(제21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기회 제공	- 시·도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제21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기회 제공
평생교육진흥 사업내용	-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제16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 수행(제16조)	- 좌동  - 시·도청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협의(제16조)
평생교육 진흥 사업 영역	- 법이 규정한 모든 평생교육 사업 ·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제22조)	

출처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2-2013 평생교육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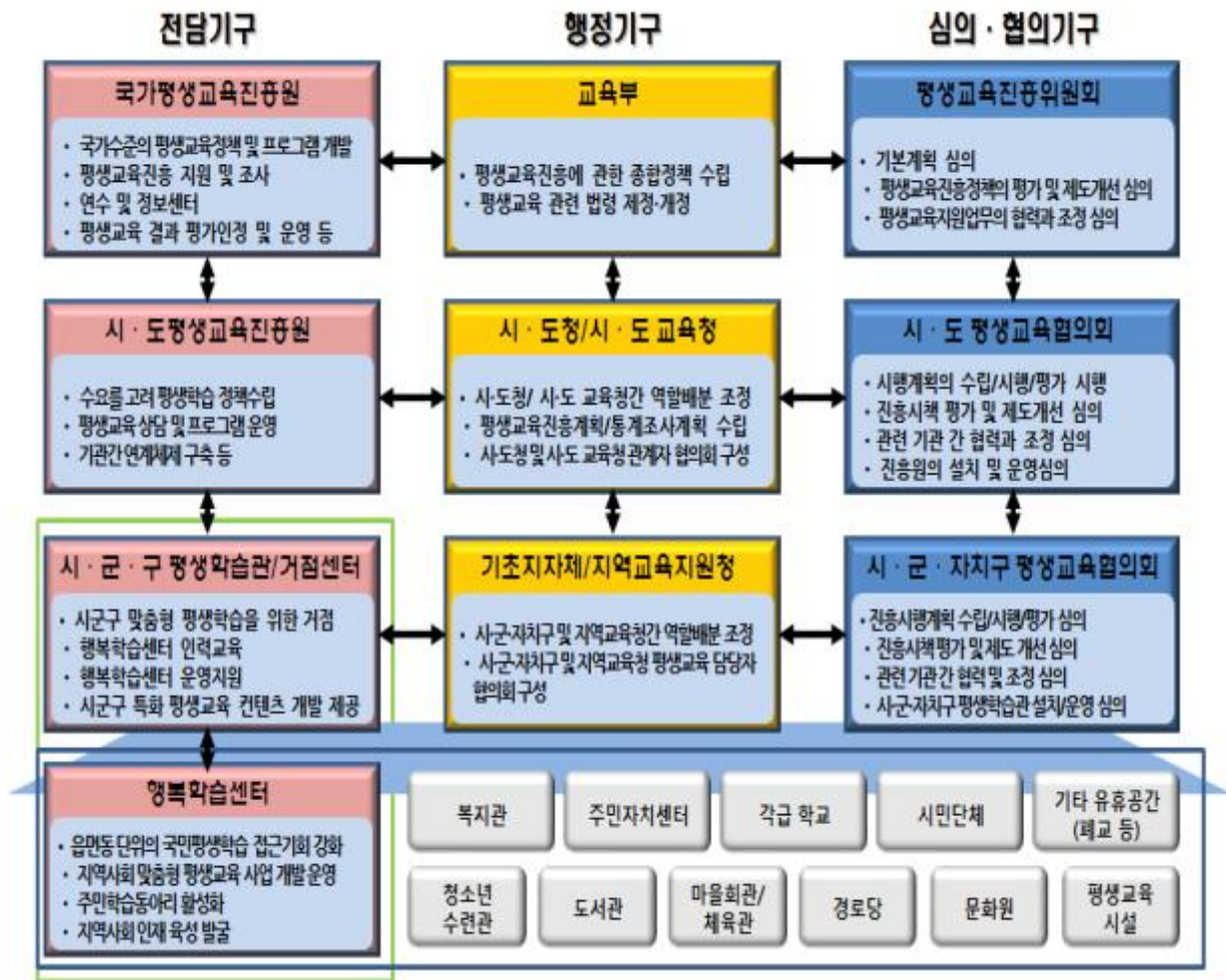
#### (4) 각 기관간의 역할

- 국가 단위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평생학습관을 두어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계획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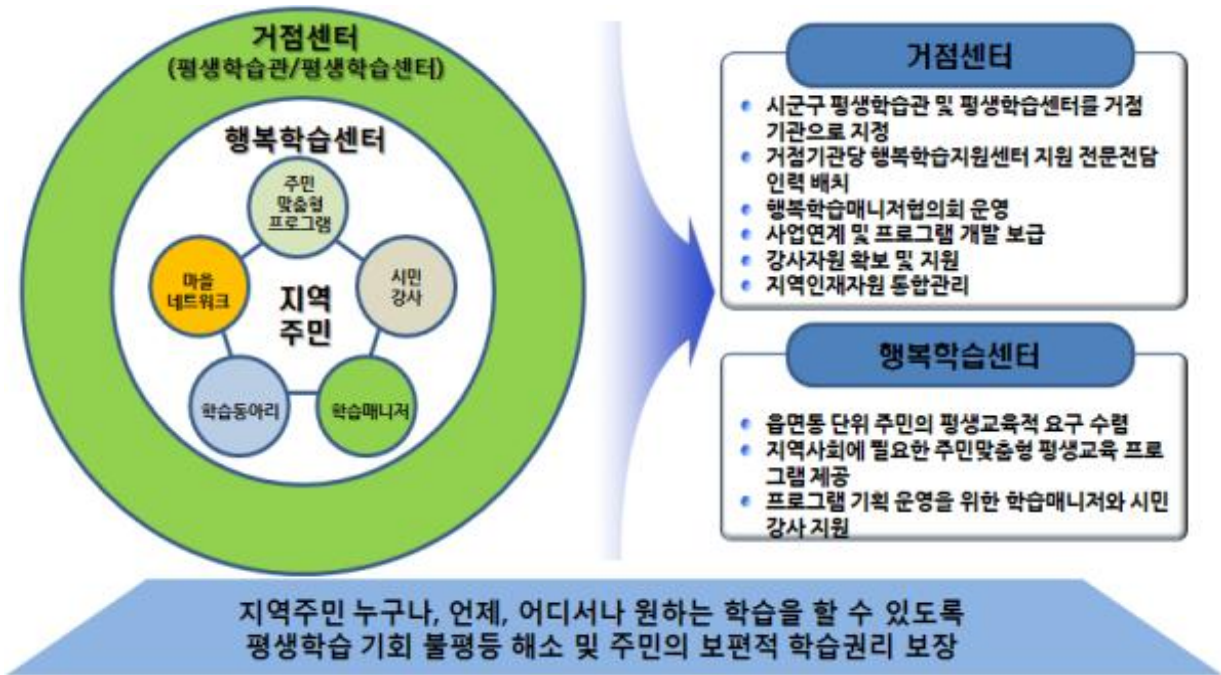
[ 표 8 ]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의 특징

구분	중앙	시·도(광역시)	시·군·구(기초)
명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설치자	국가가 설립	시·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이원화 운영체제 (지자체장 설치·지원, 교육감 지정·운영)
성격	(교육부 산하 재단법인 형태) 평생교육전담 집행기관	광역시·도차원의 평생교육사업기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사업기관
기능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조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
근거	평생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평생교육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출처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1·2012 평생교육백서.



[ 그림 4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그림 5]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

#### 2-4. 지역 평생학습 주요 여건의 변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단위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과 함께 2개 행정시의 평생학습관 운영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음. 또한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특성화,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 평생교육 기본 통계 생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
- 제주지역 평생학습기관<sup>9)</sup>(평생교육 관련 협의회 및 단체를 제외한 타 분야 단체 성격은 제외)은 약 270여 개로 대부분 제주시에 위치해 있음. 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15.9%, 직업훈련시설이 16.6%, 복지관 13.3% 순이며, 주민자치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임.
  - 제주지역 내에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학습기관은 10% 내외이며, 90% 이상이 기타 법령에 의거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장 대표적이며 주요한 시설로도 볼 수 있음.

9)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표 9] 제주지역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총 갯수	
평생 학습 시설 유형	국가 및 지자체	10	2	12 (4.4)	271 (100)
	다문화관련	3	1	4 (1.5)	
	도서관	9	11	20 (7.4)	
	문화센터	1	1	2 (0.7)	
	문화예술	3	3	6 (2.2)	
	미술관	1	-	1 (0.4)	
	박물관	3	-	3 (1.1)	
	복지관	<b>23</b>	<b>13</b>	<b>36 (13.3) 3순위</b>	
	사이버학습시설	5	-	5 (1.8)	
	시민사회	11	2	13 (4.8)	
	여성관련	6	2	8 (3.0)	
	주민자치센터	<b>26</b>	<b>17</b>	<b>43 (15.9) 2순위</b>	
	직업훈련	<b>38</b>	<b>7</b>	<b>45 (16.6) 1순위</b>	
	청소년관련	23	15	38 (14.0)	
	학교·학교부설	19	8	27 (10.0)	
기타	7	1	8 (3.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1. 1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보고서』.

- 제주지역의 평생학습기관은 제주시 187개, 서귀포시 84개로 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평생학습 관련 주요 시설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주시의 도두동·우도면·이호동과 서귀포시의 송산동·정방동·중앙동은 주민대상 평생학습시설이 주민자치센터에 거의 한정되어 있어 이 지역의 주민 들은 학습기회와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제주시의 주요 평생학습기관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3개, 도서관 8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5개, 시민사회단체 11개, 사업장 부설 시설 1개, 주민자치센터 26개로 총 187개로 조사됨.
  - 서귀포시의 주요 평생학습 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 1개, 도서관 11개, 대학 평생교육원 1개, 시민사회단체 2개, 사업장 부설 시설 1개, 주민자치센터 17개로 총 84개로 조사됨.
- 제주지역의 평생학습 유관기관에서 운영한 주요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 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교육이 증가하고 있음.

[표 10] 2011년 제주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개, %)

구 분		프로그램 수	구 분		프로그램 수
기초문해 교육	내국인 한글문해	14 (0.5)	문화예술 교육	레저생활 스포츠	277 (10.3)
	다문화 한글문해	25 (0.9)		생활문화예술	205 (7.6)
	한글 생활문해	19 (0.7)		문화예술향상	595 (22.1)
	<b>소 계</b>	<b>58 (2.1)</b>		<b>소 계</b>	<b>1,077 (40.0)</b>
학력보완 교육	초등학력 보완	37 (1.4)	인문교양 교육	건강심성	80 (3.0)
	중등학력 보완	13 (0.5)		기능적 소양	522 (19.4)
	고등학력 보완	3 (0.1)		인문학적 교양	415 (15.4)
	<b>소 계</b>	<b>53 (2.0)</b>		<b>소 계</b>	<b>1,017 (37.8)</b>
직업능력 교육	직업준비	174 (6.5)	시민참여 교육	시민책무성	46 (1.7)
	자격인증	205 (7.6)		시민리더역량	15 (0.6)
	현장직무역량	11 (0.4)		시민참여활동	36 (1.3)
	<b>소 계</b>	<b>390 (14.5)</b>		<b>소 계</b>	<b>97 (3.6)</b>
<b>계</b>		<b>2,692(100)</b>			

[표 11] 2012년 제주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개, %)

구 분		프로그램 수	구 분		프로그램 수
기초문해 교육	기초생활기술	14 (0.6)	문화예술 교육	레저생활 스포츠	98 (4)
	문자해득	19 (0.8)		생활문화예술	407 (16.5)
	문해학습계좌	1 (0.04)		문화예술향상	670 (27.2)
	<b>소 계</b>	<b>34 (1.4)</b>		<b>소 계</b>	<b>1,175 (47.7)</b>
학력보완 교육	초등학력 보완	70 (2.8)	인문교양 교육	건강심성	59 (2.4)
	중등학력 보완	10 (0.4)		기능적 소양	178 (7.2)
	고등학력 보완	7 (0.3)		인문학적 교양	173 (7)
	<b>소 계</b>	<b>87 (3.5)</b>		<b>소 계</b>	<b>410 (16.6)</b>
직업능력 교육	직업준비	153 (6.2)	시민참여 교육	시민책무성	34 (1.4)
	자격인증	130 (5.3)		시민리더역량	21 (0.9)
	현장직무역량	9 (0.36)		시민참여활동	409 (16.6)
	<b>소 계</b>	<b>292 (11.9)</b>		<b>소 계</b>	<b>464 (18.9)</b>
<b>계</b>		<b>2,462(100)</b>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보고서 재편집함. 따라서 2011년은 운영 실적율, 2012년은 운영 계획(안)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에 따라 오차 발생 여지가 있음.

- 전국 평생학습 제반 현황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 평생교육통계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평생학습 여건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대비 가장 저조한 기반 및 운영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 집계된 지역내 기관 현황<sup>10)</sup>을 살펴보면 2011년 대비 기관 수 감소(28개 →

27개)와 함께 운영 프로그램 수도 감소(1005개 → 981개)하였음.

- 이와 연계해서 준형식 평생학습기관 개황을 살펴보면, 전국이 대부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도 2011년에 비해 2013년에는 증가하였음.(2011년 8개 기관, 113개 프로그램 → 2013년 11개 기관, 105개 프로그램 운영)
- 학습자 수, 사무직원 수는 모두 2011년 대비 2013년에는 미미하게 감소를 하였고, 기반 측면에서도 전국 대비 저조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학습자 수	49,475 명	44,525 명	34,463 명 (여성 19,775명 57.4%)
교·강사 수	414 명	410 명	400 명 (여성 252명 63.0%)
사무직원 수	83 명	79 명	82 명 (38명 46.4%)

- 특히, 기반 운영에 따른 주요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습자와 교·강사는 여성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사무직원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이와 연계해서 준형식 평생학습기관 현황에서도 학습자 수, 프로그램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등 2011년 대비 2013년 현황에서는 감소와 증가가 매우 미미하게 대비되고 있으며, 전국 대비시에도 매우 저조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준형식 평생학습기관의 여성 근무자는 교원 수(총 32명 중 1명)와 사무직원 수(10명 중 전무)에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전국적으로는 평생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사 양성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2012년 이후 자격증 취득 인원이 전혀 없음. 이는 전국현상과 반대되는 결과로 평생교육사 양성을 통한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고용형태가 대부분 정규직으로서 전체 인원의 89% 비율을 차지함. 이 중 여성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46.5%, 비정규직에서는 89%에 해당하고 있음. 또한 자격증 소지 정도는 전체 인원 중 26.8%로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음

10) 한국교육개발원(2013. 12), 『2013 평생교육통계조사』. 제주지역 기관현황으로 대학(원)부설(4개), 원격형태(2개), 사업장부설(2개), 시민사회단체부설(6개), 언론기관부설(3개), 지식인력개발형태(4개), 평생학습관(6개)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록 평생학습시설과 2개 행정시 평생학습관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치임. 또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는 방송통신고등학교(1개), 특수대학원(10개)임.

[표 12]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사무직원 주요현황

(2013년 기준, 단위 : 명)

시설 구분	고용형태				자격증 소지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여성채용	1급	2급	3급	합 계
유초중등 학교부설	-	-	-	-	-	-	-	-
대학(원) 부설	15	2(2)	17	3	-	6	-	6
원격형태	5	-	5	2	-	1	-	1
사업장 부설	8	2(2)	10	3	-	3	-	3
시민단체 부설	10	5(4)	15	5	1	5	-	6
언론 기관 부설	4	-	4	-	-	1	-	1
지식·인력개발형태	10	-	10	8	-	2	-	2
평생학습관	21	-	21	9	-	3	-	3
계	73 (89%)	9(8) (11%)	82 (100%)	30 (36.6%)	1	21		22

- 이외에도 제주지역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중 국가 및 지자체, 법인형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훈련지정 기관은 총 27개 중 11개,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2개임.

○ 제주지역 평생학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월등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음. 주민자치센터가 552개(22.4%)로 가장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학교·학교부설이 476개(19.3%), 국가 및 지자체가 368개(14.9%), 도서관이 294개(11.9%) 순으로 나타났음. 그 외 기관 및 시설은 10% 미만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sup>11)</sup>

[표 13] 전국 평생교육기관별 참여프로그램 유형(비형식교육 중심)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	복지관(21.5%), 주민자치센터(15.4%), 사업장부설(13.6%)	
직업능력향상	직장(49.0%), 학원(12.6%), 인터넷강의(8.9%)	
인문교양	직장(14.0%), 종교시설(13.0%), 주민자치센터(13.0%)	
문화예술	학원(29.4%), 주민자치센터(24.1%), 사업장 부설(14.1%)	
시민참여	주민자치센터(42.2%), 시민사회단체부설(9.0%), 직장(8.9%)	

한국교육개발원(2013. 12), 『2013 평생교육통계조사』 재편집.

- 제주지역의 2011~2013년(3년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의 평균에서는 ① 주민자치(26.7%), ② 문화여가(24.5%), ③ 시민교육(15.3%), ④ 지역사회 진흥(14.8%), ⑤ 지역복지(12.2%), ⑥ 주민편익(6.6%), ⑦ 기타 (0.1%) 순으로 나타났음.

11) 홍정순 외(2013. 12), 『제주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보고서-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 반면, “한국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0)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① 문화예술 교육 1,077개(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② 인문교양교육 1,017개(37.8%), ③ 직업능력교육 390개(14.5%) 순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시민참여 교육 97개(3.7%), 기초문해교육 58개(2.2%), 학력보완교육 53개(2.0%)로 낮은 비율을 보여줌.(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2012)
-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에서 유사하거나 중복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대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와 지역 사회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관련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음. 단,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그 외 대도시라도 평생학습시설(기관)이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전국 여건보다 더욱 열악한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낙후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 기반 조성과 관련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선, 비형식 평생교육기관(단체 포함)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지역별, 기관별 협업을 통한 특성화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평생학습 기반 강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점(전환점 계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강사와 사무직원의 근무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음. 따라서 행·재정 지원을 확충하면서 기관별 특성화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전국 수준으로 도민들이 학습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근린형’ 평생학습 시설(기관)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운영 확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3. 계획의 시사점

#### (1) 일-학습-능력 연계성 강화

-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일-학습-능력 연계를 통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창조형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학교, 직장, 사회에 일-학습이 양립 가능한 평생 학습체계 구축이 요구됨.

#### (2) 평생학습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내 활성화

- 지역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 주도형 평생학습 문화가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당분간 지속적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자의 욕구, 특성, 학습행동 등의 특성에 따라, 각 집단별로 매력도를 평가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3) 협력과 네트워크의 활성화

-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 및 지역내 인적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대외교섭력을 강화하고 정보교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함.
- 대내외적으로 환경변화가 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재정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 지역 대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도록 함.
- 공동 평생학습 활동을 통해 자원의 중복투자 방지에 의한 비용을 절감하고 평생학습 참여주체 간 상호보완을 통해 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4) 평생학습 성과 고유 확산을 위한 총체적 접근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내 평생학습 유관기관간 인적·물적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 평생교육진흥원, 지역대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협업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적·물적자원의 공동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시너지를 극대화함.

- 단순히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홍보성 행사나 공공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집행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성, 학술활동, 행정지원, 기본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5)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안착 지원

- 평생학습 환경변화 및 평생학습 수요자 욕구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학습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 수요에 부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탐색·식별하고, 이를 제주지역 평생학습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특히,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사회참여 포함)-복지의 연계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확충 및 복지서비스 확대 효과 유도

#### (6)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

- 평생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확충을 해 나가야 함. 평생학습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인적자원 확충 및 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자본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학습 성과 평가는 손익계산에 의한 성과 평가보다는 합리성 및 효과성 원리에 근거하여 진행해 나가야 함. 즉, 일회성 참여로 만족하는 학습이 아니라 평생학습자 관점에서 이들의 만족도와 효용성을 제고하고 총체적으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장기 지향적 관점이 필요함.

## 제 2 장 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

###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 1-1. 비 전

##### □ 『배움, 창조, 공유를 통한 글로벌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국가의“100세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과 제주도정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토대로 제주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구체성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자 함.

- 배움 : 학력(學歷)보다는 학력(學力)을, 만나는 사람을 스승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습,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배움
- 창조 : 지식과 삶의 조화 추구, 혁신하는 태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조역량 강화
- 공유 : 학습의 결과와 지식(정보)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 시대에 걸맞는 제주도민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 1-2. 목 표

○ 제주지역 평생학습 비전 달성을 위해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 (1) 창조적 학습을 주도하는 행복한 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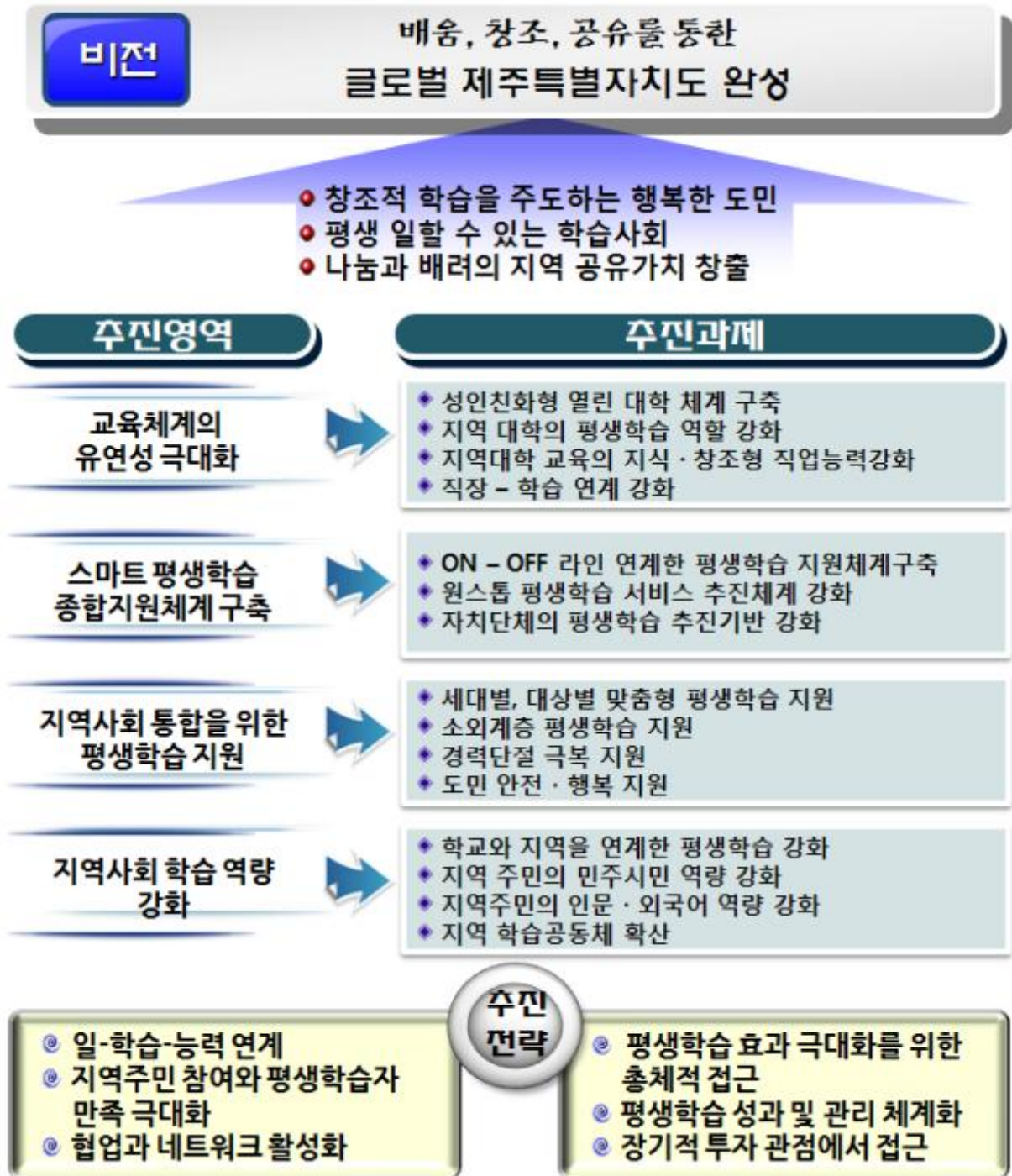
○ 지식기반사회 및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민들이 평생학습 접근의 용이성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보·지식 교류의 원활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고자 함.

##### (2) 평생 활동하고 참여하는 학습사회

○ 제주지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활동가능 인구 감소 등과 함께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평생학습을 통해 평생 현역을 지향하는 협력적 학습공동체 조성이 필요함.

### (3) 나눔과 배려의 지역 공유가치 창출

- 평생학습을 통해 갈등 예방, 치유 능력을 배가시킴으로써 사회적자본이 견고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이뤄나가야 함.



[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목표 및 추진과제

##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 영역

### 2-1. 계획의 범위

#### □ 시간적 범위

- 2015년(1개년 시행계획 중심)
- 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는 전년도 실적 등도 포함하고 있음

####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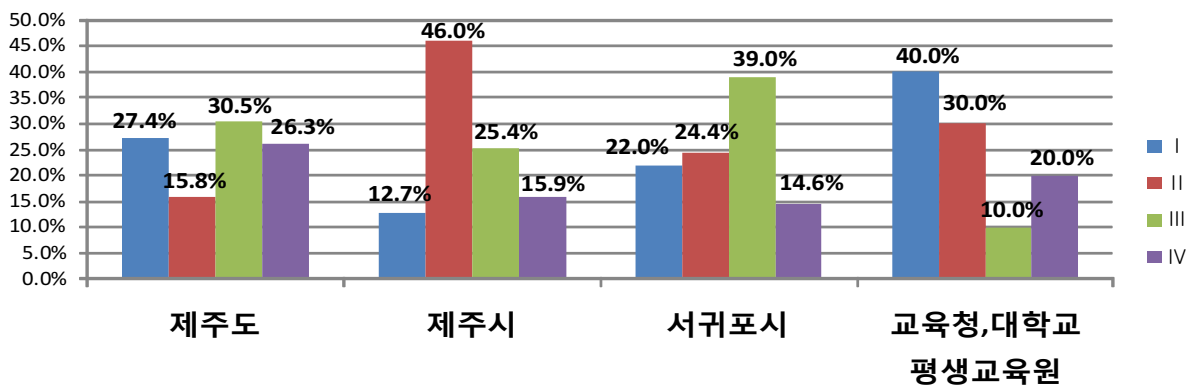
#### □ 내용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으로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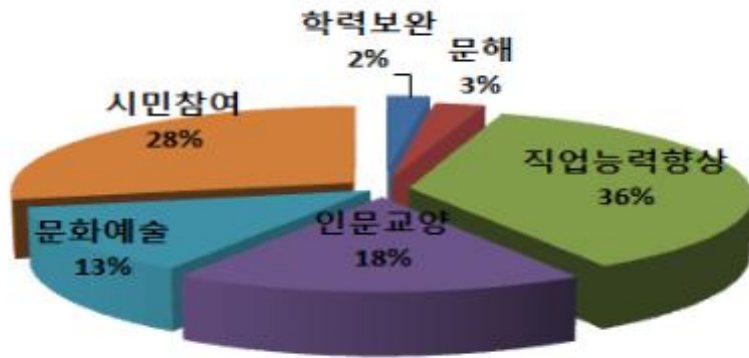
### 2-2. 계획의 주요 영역 및 과제

#### □ 사업 총괄현황

구 분	단위사업(개)				소 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대학교 평생교육원	
I.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52	8	9	4	73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구축	30	29	10	3	72
III.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 학습 지원	58	16	16	1	91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50	10	6	2	68
합 계	190	63	41	10	304



[그림 7] 2015년 제주지역 부문별 사업총괄 현황



[그림 8] 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 6진 분류체계에 따른 사업총괄 현황

□ 사업비 총괄현황

구 분	소요예산 (천원)				소 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대학교 평생교육원	
I.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7,321,200	130,000	2,769,064	264,800	10,485,064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계 구축	3,721,980	1,194,173	854,240	579,170	6,349,563
III.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4,220,004	1,173,996	626,307	14,340	6,034,647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4,640,496	407,262	154,262	216,898	5,418,918
합 계	19,903,680	2,905,431	4,403,873	1,075,208	28,288,192

□ 세부 영역별 과제 현황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I.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1-1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40,000
		경제정책과	1-2	협동조합 아카데미	50,000
		골목상권살리기 추진단	1-3	골목상권 살리기 체험 아카데미	30,000
		경제정책과	1-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150,000
		경제정책과	1-5	전문직업상담원 동행면접 프로그램	80,000
		경제정책과	1-6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40,000
		경제정책과	1-7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300,000
		경제정책과	1-8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7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경제정책과	1-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236,250
	고용센터	1-10 청년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456,000
	고용센터	1-11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494,000
	고용센터	1-12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638,000
	고용센터	1-13 실업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	29,000
	기업지원과	1-14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10,000
	기업지원과	1-15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	190,000
	기업지원과	1-16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270,000
	기술지원조정과	1-17 미래 후계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교육	18,000
	기술지원조정과	1-18 새농업기술강좌 및 농업현장 체험교육	60,000
	기술지원조정과	1-19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50,000
	기술지원조정과	1-20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3,900
	기술지원조정과	1-21 농업인 전문교육	126,000
	기술지원조정과	1-22 원예치료사 양성 교육	30,000
	기술지원조정과	1-23 농촌관광 경영자과정 운영	40,000
	제주농업기술센터	1-24 농업인 전문교육	89,000
	제주농업기술센터	1-25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 교육	28,000
	제주농업기술센터	1-26 우리쌀 이용식품 가공기술교육	11,25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27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88,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28 농기계 교육훈련 운영	62,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29 농업인 소규모 창업 교육	71,5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30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교육	20,000
	동부농업기술센터	1-31 농업인 전문교육	60,000
	서부농업기술센터	1-32 농업인 전문교육	47,500
	서부농업기술센터	1-33 농업인 전문교육	25,500
	서부농업기술센터	1-34 6차산업 활성화 교육	30,000
	서부농업기술센터	1-35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교육	18,000
	친환경농정과	1-36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	36,000
	관광산업과	1-37 관광 외국어 교육	50,000
	투자정책과	1-38 이전기업 일자리창출 맞춤형 교육	36,000
	통상정책과	1-39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GTEP)	178,300
	문화정책과	1-40 사립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문화정책과	1-41	사립박물관 미술관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0
		1-42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회계실무 전문 교육	20,000
		1-43	사회복지지원봉사자 육성사업	30,000
		1-44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59,000
		1-45	안마사교육 운영	90,000
		1-46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40,000
		1-47	세정대학 교육	50,000
		1-48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 교육	30,000
		1-49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	100,000
		1-50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650,000
		1-51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	800,000
		1-52	고급환경전문가과정 교육	50,000
	제주시	1-5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각, 농아, 신장)	15,000
		1-54	취약계층 직업훈련	25,000
		1-55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10,000
		1-56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교육	10,000
		1-57	여성단체 능력개발사업	20,000
		1-58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10,000
		1-59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0,000
		1-60	창직 아카데미 운영	10,000
	서귀포시	1-61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910,000
		1-62	성인결혼이주민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사업	23,000
		1-63	진로직업 박람회	120,000
		1-64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	1,440,464
		1-65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30,000
		1-66	창업아카데미 운영	15,000
		1-67	지역맞춤형 인재양성교육	10,600
		1-68	관광아카데미 운영	10,000
		1-69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	210,000
	대학교 평생교육원	1-70	찾아가는 상인 중국어 교육 사업	15,000
		1-71	전업주인을 위한 제주관광의 이해와 관광 자원 스토리텔링과정	20,000
1-72		소물리에 종사인력 양성	20,000	
1-73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 사업	209,800	

구 분	추진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II. 스마트 평생 학습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기술지원조정과	II-1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640,000
		경제정책과	II-2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165,000
		제주농업기술센터	II-3	농기계 교육장 운영	14,100
		문화정책과	II-4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15,000
		문화정책과	II-5	도민문학학교 운영	150,000
		문화정책과	II-6	토요문화학교 운영	390,000
		문화정책과	II-7	탐라선비문화학교 운영	15,000
		문화정책과	II-8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1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II-9	창의마당·생태교실 운영	10,000
		스포츠산업과	II-10	승마교실 운영	30,000
		스포츠산업과	II-11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4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12	노인대학원 운영	7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13	노인대학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000
		사회교육과	II-14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12,780
		사회교육과	II-15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27,000
		사회교육과	II-16	생활외국어 포켓북 제작	12,000
		사회교육과	II-17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	121,100
		평생교육과	II-18	제주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	50,000
		평생교육과	II-19	문해교육기관 운영	250,000
		평생교육과	II-20	문해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사업	70,000
		평생교육과	II-21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20,000
		평생교육과	II-22	제주평생교육정보(다모아)시스템 운영	27,000
		평생교육과	II-23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50,000
		평생교육과	II-24	중국어체험학습관운영	500,000
		평생교육과	II-25	평생학습 권역화 거점시설 지정 및 행복 학습센터 운영	25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II-26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사업	175,000
		디자인건축지적과	II-27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20,000
		교통정책과	II-28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17,000
		환경정책과	II-29	제주환경대학 운영	20,000
		환경정책과	II-30	기후변화교육 운영	40,000
	제 주 시	안전총괄과	II-31	안보교육	10,500
		안전총괄과	II-32	실전체험훈련장 교육	28,993
		자치행정과	II-33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10,000
		자치행정과	II-34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사업	18,000

구 분	추진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자치행정과	11-35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	229,100	
	자치행정과	11-36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12,000	
	자치행정과	11-37	직장인 평생교육 지원	20,000	
	자치행정과	11-38	직장인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10,000	
	자치행정과	11-39	열린시민교육 지원	20,000	
	자치행정과	11-40	전통 공예과정 교육	10,000	
	제주시마을만들기 추진팀	11-41	농촌현장 포럼운영	29,000	
	주민복지과	11-4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10,000	
	주민복지과	11-43	드림스타트 영역별 서비스 지원	95,000	
	경로장애인 복지과	11-44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200	
	경로장애인 복지과	11-45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	56,000	
	경로장애인 복지과	11-46	늘푸른대학 기능보강 작업	50,000	
	여성가족과	11-47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35,000	
	여성가족과	11-48	참사랑문화의집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4,580	
	여성가족과	11-49	서부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10,000	
	여성가족과	11-50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87,000	
	여성가족과	11-51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18,300	
	문화예술과	11-52	문화대학 운영	18,000	
	문화예술과	11-53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운영	30,000	
	문화예술과	11-54	전통학교 운영	15,000	
	문화예술과	11-55	살아 숨쉬는 제주향교 운영	50,000	
	탐라도서관	11-56	도서관대학 운영	30,000	
	농정과	11-57	농업성공대학 운영	187,500	
	해양수산과	11-58	찾아가는 수산대학 시범 운영	15,000	
	축산과	11-59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30,000	
	서 귀 포 시	자치행정과	11-60	주민자치학교 운영	11,000
		평생교육지원과	11-61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67,000
		평생교육지원과	11-62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25,740
		평생교육지원과	11-63	여성문화 교육운영	120,000
정보화지원과		11-64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	33,500	
복지위생과		11-65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	231,000	

구 분	추진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여성가족과	II-66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35,000
		여성가족과	II-67 같이 함께 최남단글로벌 다문화창조학교 운영	216,000
		문화예술과	II-68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15,000
		지역경제과	II-69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운영	100,000
	교육청	제주학생문화원	II-70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235,350
		미래인재교육과	II-71 평생학습관 운영	163,470
		미래인재교육과	II-7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180,350

구분	추진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Ⅲ.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 학습 지원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경제정책과	III-1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트랙 운영	10,000
		기술지원조정과	III-2 귀농귀촌 교육	20,000
		제주농업기술센터	III-3 귀농귀촌 및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28,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III-4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10,5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III-5 귀농귀촌 대상자 교육	15,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III-6 귀농귀촌교육 현장 실습	24,000
		동부농업기술센터	III-7 귀농귀촌 현장실습	24,000
		서부농업기술센터	III-8 귀농귀촌 영농현장 실습	24,000
		에너지산업과	III-9 에너지 교육 및 Workshop 연수	16,000
		친환경농정과	III-10 귀농귀촌인 농촌 재능기부 및 교육프로그램	30,000
		수산정책과	III-11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50,000
		수산정책과	III-12 수산질병 방역교육	20,000
		평화협력과	III-13 평화아카데미 운영	60,000
		복지청소년과	III-14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10,000
		복지청소년과	III-15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사업	30,000
		복지청소년과	III-1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16,050
		복지청소년과	III-17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215,940
		노인장애인복지과	III-18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7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I-19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24,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I-20 제주치료교육협회 치료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부모교육	1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I-21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0,5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I-22 (사)한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	1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I-23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0

구분	추진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III-24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20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I-25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117,740
	여성가족정책과	III-26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13,500
	여성가족정책과	III-27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5,000
	여성가족정책과	III-28 여성리더십함양 사회역량강화사업	1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29 BPW 프로그램 운영 사업	1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30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2,000
	여성가족정책과	III-31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2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32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25,000
	여성가족정책과	III-33 다문화가족 문화 역사 언어교육 운영	15,000
	여성가족정책과	III-34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교육 운영	2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35 다문화가족 온라인 한국어교육	-
	여성가족정책과	III-36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37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3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38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사업	3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39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보건위생과	III-4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105,000
	보건위생과	III-41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569,000
	보건위생과	III-42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홍보 및 운영	2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III-43 여성전문교육 운영	150,000
	방호구조과	III-44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13,600
	정보화담당관	III-45 장애인 정보화 교육	109,524
	정보화담당관	III-46 고령자 정보화 교육	12,400
	정보화담당관	III-47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6,250
	자치행정과	III-48 제2새마을운동 핵심리더 교육	15,000
	자치행정과	III-49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운영	10,000
	평생교육과	III-50 성인문해교육	20,000
	평생교육과	III-51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	30,000
	평생교육과	III-52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0,000
	평생교육과	III-53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700,000
	평생교육과	III-54 보물섬 교육공동체 교육환경개선	40,000
	평생교육과	III-55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非)교과 프로그램 운영	600,00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III-56 외국인 제주(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15,000

구분	추진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제 주 시	교통정책과	Ⅲ-57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체험교육연수	137,500	
	교통정책과	Ⅲ-58 화물자동차운전자 안전운행체험교육연수	45,500	
	자치행정과	Ⅲ-59 국민운동단체 중앙단위 자원봉사자 육성교육	10,000	
	자치행정과	Ⅲ-60 주민자치학교 운영	15,000	
	자치행정과	Ⅲ-61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130,000	
	주민복지과	Ⅲ-62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토요프로그램 운영	50,000	
	주민복지과	Ⅲ-63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34,000	
	주민복지과	Ⅲ-64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50,000	
	경로장애인 복지과	Ⅲ-65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	18,000	
	경로장애인 복지과	Ⅲ-66 제주시 실버밴드 운영	15,000	
	경로장애인 복지과	Ⅲ-67 노인교실 운영	60,000	
	경로장애인 복지과	Ⅲ-68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	10,000	
	여성가족과	Ⅲ-69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80,000	
	여성가족과	Ⅲ-70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10,200	
	여성가족과	Ⅲ-7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644,084	
	여성가족과	Ⅲ-72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17,712	
	관광진흥과	Ⅲ-73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0	
	농정과	Ⅲ-74 귀농인 창업실습	20,000	
	서 귀 포 시	마을만들기추진팀	Ⅲ-75 마을발전 마을별 리더교육 운영	10,000
		마을만들기추진팀	Ⅲ-76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역량사업	163,520
		자치행정과	Ⅲ-77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 운영	40,000
		자치행정과	Ⅲ-7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80,000
		자치행정과	Ⅲ-79 귀농귀촌 정착 교육사업	72,000
		평생교육지원과	Ⅲ-80 소외계층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0,000
		평생교육지원과	Ⅲ-81 2015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15,000
		평생교육지원과	Ⅲ-82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20,000
복지위생과		Ⅲ-83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0,000	
여성가족과		Ⅲ-84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54,757	
여성가족과		Ⅲ-85 읍면별 찾아가는 맞춤형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26,900	
여성가족과		Ⅲ-86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4,000	
여성가족과		Ⅲ-87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3,000	
여성가족과		Ⅲ-88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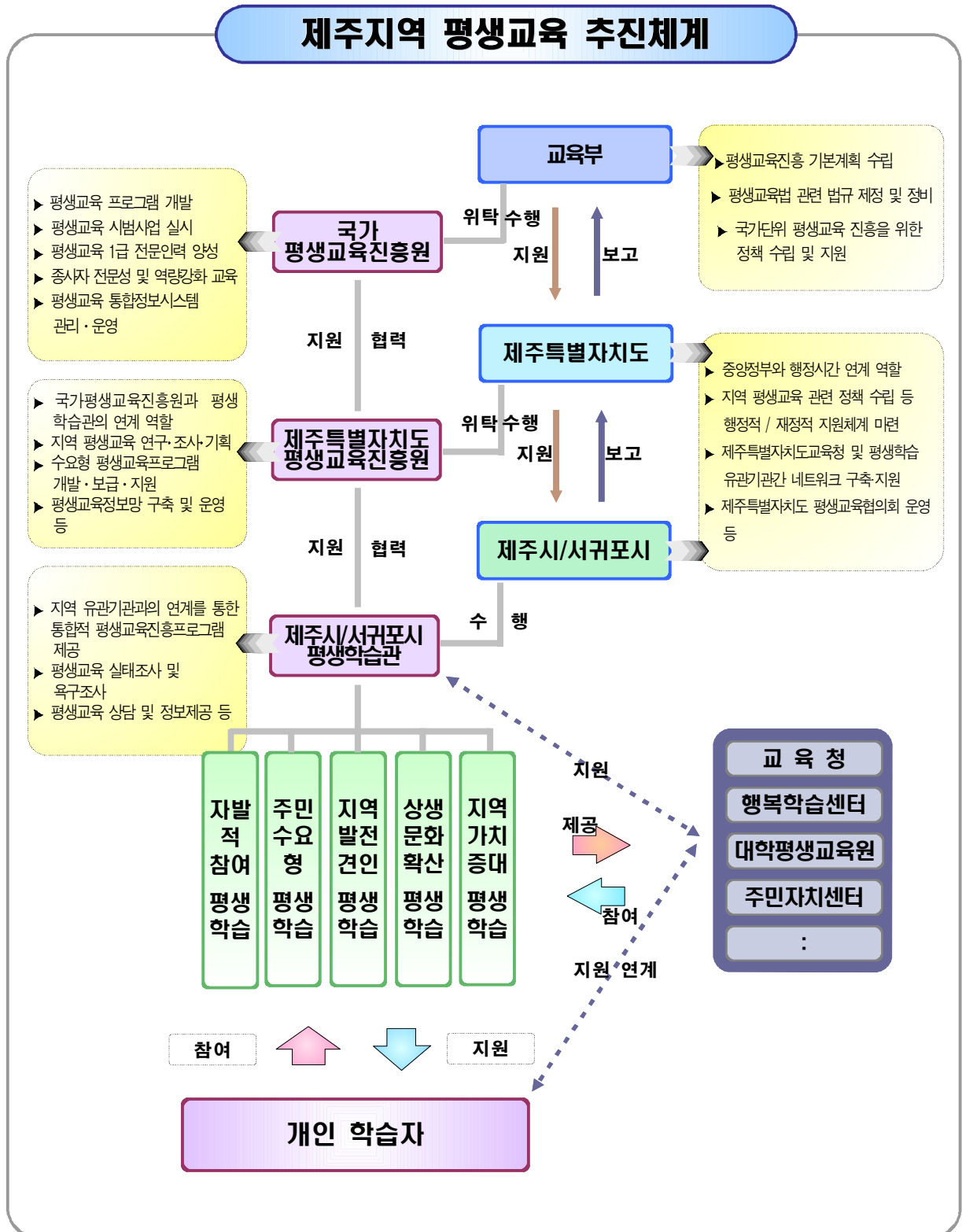
구분	추진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고령층	여성가족과	III-89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30,000
	여성가족과	III-90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16,130
	미래인재교육과	III-91	초등학력인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14,340

구분	추진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IV. 지역 사회 학습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IV-1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교육	10,000
		경제정책과	IV-2	제주 사회적경제 공감체험학교 교육	20,000
		기술지원조정과	IV-3	21세기 시민그린대학운영	25,000
		기술지원조정과	IV-4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연찬회 및 현장교육	10,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IV-5	전통식문화계승 활동 교육	50,000
		동부농업기술센터	IV-6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교육	25,000
		동부농업기술센터	IV-7	농촌생활과학기술 교육 지원	15,000
		서부농업기술센터	IV-8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교육	25,000
		미래전략산업과	IV-9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지도자과정 운영	73,000
		식품산업과	IV-10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52,800
		식품산업과	IV-11	제주 7대 향토음식 교실 운영	13,400
		친환경농정과	IV-12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24,592
		수산정책과	IV-13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62,710
		수산정책과	IV-14	최고수산업 경영자 과정	96,000
		수산정책과	IV-15	외국인 선원 교육훈련	20,000
		해양산업과	IV-16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생태 체험 학습	23,000
		도립미술관	IV-17	미술관 대학운영	12,000
		도립미술관	IV-18	미술관 문화아카데미 운영	70,000
		문화정책과	IV-19	제주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0
		문화정책과	IV-20	제주어 이해와 표현 전문 과정	60,000
		문화정책과	IV-21	제주어 청소년 교육 및 동영상 제작	10,000
		문화정책과	IV-22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90,000
		문화정책과	IV-23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41,760
		문화정책과	IV-24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30,000
		문화정책과	IV-25	갯전시관 홍보물 제작 및 교육	10,000
		문화정책과	IV-26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	25,000

구 분	추진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민속자연사 박물관	IV-27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학아카데미	50,000	
	스포츠산업과	IV-28	미래 꿈나무 골프 아카데미 운영	50,000	
	스포츠산업과	IV-29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30,000	
	복지청소년과	IV-30	청소년 신문활용 교육사업	20,000	
	복지청소년과	IV-31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10,000	
	보훈청	IV-32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사업	3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IV-33	문화교육 및 인문학 특강	106,240	
	소통정책관실	IV-34	영어방송을 통한 제주특집 프로그램 운영	12,000	
	사회교육과	IV-35	도민사회교육 운영	107,850	
	사회교육과	IV-36	탐라의 얼 아카데미	15,000	
	사회교육과	IV-37	제주 리더스스쿨 과정 교육	50,000	
	사회교육과	IV-38	수준별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	90,000	
	사회교육과	IV-39	관광중사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430,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IV-40	도민 법교육 운영	50,000	
	평생교육과	IV-41	“재능으로 모다지다” 평생교육사업	15,000	
	평생교육과	IV-42	지역특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00	
	평생교육과	IV-43	제주 『꿈, DO! Dream』 센터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1,600,000	
	환경정책과	IV-44	환경 체험교육 프로그램	71,430	
	환경정책과	IV-45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교육	35,000	
	환경정책과	IV-46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285,714	
	환경정책과	IV-47	친환경 사회체제 실천 프로그램 운영	50,000	
	환경지산보전과	IV-48	생태환경 체험교육	13,000	
	산림휴양정책과	IV-49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려니숲길)	200,000	
	산림휴양정책과	IV-50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	15,000	
	제 주 시	제주시마을만들기 추진팀	IV-51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50,000
		제주시마을만들기 추진팀	IV-52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100,000
		경로장애인 복지과	IV-53	취미교실 운영	20,000
		여성가족과	IV-54	한국어교육 운영	22,262
		여성가족과	IV-55	청소년공부방 운영	120,000
		관광진흥과	IV-56	제주별빛누리공원 토요교육프로그램 운영	15,000
축산과		IV-57	청소년 승마 적응 프로그램 운영	15,000	

구 분	추진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서 귀 포 시	축산과	IV-58	가족사랑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35,000
	축산과	IV-59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15,000
	지역경제과	IV-60	생활과학교실 운영	15,000
	평생교육지원과	IV-61	글로벌·문화아카데미 운영	30,000
	복지위생과	IV-62	충효·한문교실 운영	15,000
	여성가족과	IV-63	한국어교육 운영	22,262
	문화예술과	IV-64	서귀포문화원 문화동아리 지원사업	10,000
	서귀포예술의전당	IV-65	문화예술교육 운영	27,000
	축산과	IV-66	승마아카데미운영	50,000
	교 육 청	미래인재교육과	IV-67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미래인재교육과		IV-68	학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자체 편성

### 3. 제주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





# 제 2부

---

## 2015년 영역별 시행계획

- 제 1 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 제 2 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 제 3 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제 4 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



## 제 1 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 I-1.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일반기업의 사회적기업 관심 제고를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 사회적기업 대표 및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8조

### 사업개요

- 건 명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인사, 노무관리 등 기업 운영 실무교육
- 위 치 : 도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중간관리자 또는 실무자 등
- 사 업 량 : 사회적기업 리더양성,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적경제 교육 등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지방비 100%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 : 10월 ~ 12월

## I-2. 협동조합 아카데미

### 사업의 필요성

- 협동조합의 본질과 취지의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협동조합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증대를 통한 협동조합의 경영 기반 확립
- ※ 사업시행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위 치 : 도 일원 및 도내 협동조합
- 사 업 량 : 도내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사업 1식
- 주요내용 : 협동조합 창업희망자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원과 운영진 등의 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심화과정까지 지속적인 아카데미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협동조합 교육 아카데미 과정을 통한 인식확산 : 연중

○ 협동조합을 통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 양성 : 연중

### I-3. 골목상권 살리기 체험 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골목상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잠재고객 확보

○ 젊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 진열 등 소비자 입장에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

사업개요

○ 건 명 : 골목상권 현장체험 아카데미

○ 사업량 : 골목상권 10개소(전통시장 6, 골목슈퍼 2, 동네빵집 2)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0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상권 홍보 및 블로그 운영, 경영컨설팅, 거리공연 및 이벤트 개최 등

### I-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사업의 필요성

○ 도내 대학생들에게 영어연수와 전문분야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

※ 사업시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 제12조(글로벌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사업개요

- 사업량 : 해외인턴 및 취업지원 72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6년 1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지방비 100%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2년 이내 기  
졸업자

향후 추진계획

- 2015 해외인턴십 계획 수립 및 대학 통보 : 2015년 1월
- 대학별 사업계획서 제출 : 2015년 2월
- 해외인턴십 추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정산 및 사업평가 : 2016년 2월

## I-5. 전문직업상담원 동행면접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직업상담사의 전문적 취업알선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구인기업의 인력난, 구직자의  
직업정보 부족에 따른 구직난 등을 해소하여 고용활성화 제고 추진
  - \* 전문적 취업알선 : 기업방문 구인 상담 및 구인정보 발굴, 道구인정보 홈페이지  
「청년일자리코너」 등재, 구직자 대상 취업서류 작성 컨설팅  
및 구인기업 동행면접 시행 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YWCA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사업내용 : 구직자 동행면접, 기업 방문 구인 상담, 청년일자리코너 운영
  - ※ 2013년도 직업상담사 동행면접 프로그램에서 사업명칭 변경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개시

## I-6.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 사업의 필요성

- 취업시즌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명강사를 활용, 인문학, 경영학 등을 포함하는 직업교육 추진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 제12조(글로벌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사업기간 : 2015년 2. 1 ~ 2015년 12. 31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사업내용
  - 철학, 문학, 과학/기술, 경영경제를 망라하는 전문가 수업 및 현장실습
  - 기획, 관리, 영업 분야별 기업실무 과제연습을 통한 종합적 업무능력 배양
  - 도내 중견 직장인 1:1 멘토그룹 형성하여 학습, 진로, 취업 상담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월 사업계획 확정
- 2015년 2월 사업비 교부

## I-7.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대학·기업·행정 간의 협력체계 강화로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취업활로 개척 및 기업 맞춤형 고급 기술인력 양성 공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대학교
- 사업대상 : 대학 졸업예정자(미취업 졸업자 포함)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6년 1월
- 주요내용 : 유무선설비, 문화콘텐츠 등 성장유망 직종 인력양성

향후 추진계획

- 2015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침 수립 및 사업 개시 : 2015년 1월

## I-8.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취업시즌을 앞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저명강사를 활용, 직업교육 추진으로 직업의식 고취 및 이직률 최소화
- ※ 사업시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 제12조(글로벌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사업개요

- 사업량 : 도내 대학교
- 사업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7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월 사업계획 확정 통보
- 2015년 2월 사업비 교부

## I-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지역단위 비영리단체(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포럼, 연구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

사업개요

- 위 치 : 도 일원
- 사업량 :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등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236,2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정부예산 확정 후 특화, 연구, 포럼사업,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등 공모에 의해 세부사업 확정

## I-10.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청년에게 다양한 직장·직업체험을 통하여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진로 탐색 및 경력형성의 기회 제공으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직업의식 고취·구직스킬 역량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용촉진
- ※ 사업시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제공),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15이상~34세 이하의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휴학생가능) 및 연수실시기관(우선지원대상기업지원)
- 사업규모 : 2015년 800명(강소기업체험 400명, 강소기업탐방 400명)
- 소요예산 : 45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 및 기업 대상 지속적인 청년 강소기업체험 연계 추진
-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제고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강소기업탐방 기회를 제공해 지방 강소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되, 필요에 따라 직업체험 또는 취업캠프를 병행하여 운영 (1일/무박2일, 1일 5시간 이상)

## I-11.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필요성

- 지역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로 지역실업자의 고용촉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제16조, 지역실업자 직업

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노동부예규 제564호)

사업개요

- 사업량 : 도내 거주 실업자 449명
- 사업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494,000천원
- 지원내용 : 위탁훈련기관 훈련비 지급 및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I-12.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필요성

-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인력양성으로 고용을 촉진
- ※ 사업시행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제18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노동부예규 제577호)

사업개요

- 사업량 : 신규실업자 등 415명
- 사업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63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직업훈련기관 지도점검 등으로 내실 있는 직업훈련 운영

**I-13. 실업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 직업훈련) 홍보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으로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제18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29,000천원

- 사업내용
  - 내일배움카드제 상담인력 운영 및 제도 홍보

향후 추진계획

- 체계적·전문적 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촉진

### I-14.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기업생존의 필수요건인 인재 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의 교육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내 산업기반 확충 및 투자 확대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추진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 ⇨ **지원업체 교육실시** ⇨ **교육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량 : 도내 중소기업 10개소 (제조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작성 : 2015년 1월
- 교육추진 : 2015년 2월 ~ 12월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16년 1월

### I-15.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사업

사업의 필요성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문화교육 및 창업비용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성공창업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사업 (예비창업자 창업소요비용 지원 외 3개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사업시행 최초년도 : 2010년)
- 소요예산 : 190,000천원
  - ※ “소상공인 창업대전 참가”, “소상공인전문창업아카데미” 사업과 연계 운영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사업계획 수립 : 2015년 2월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본교육 실시 : 4월
- 박람회 참가 및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 4~5월
-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지원 : 5월~12월
- 성과분석 및 사업비 정산 : 2016년 2월

## I-16.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청년일자리 부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건의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인재 수급에 부합하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현장 맞춤형 기술 인력으로 육성,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및 청년실업난 해소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사업개요

- 시행기관 :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 사업량 : 5개교 24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사업시행 최초년도 : 2011년)
- 소요예산 : 27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기업-특성화고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사업성과보고회 : 2015년 2월
- 인력양성프로그램 사업설명회 및 참여 학교 신청·접수 : 2015년 3월
-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 선정 : 2015년 4월
-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채용협약 등 사업 추진 : 2015년 4월~12월

## I-17. 미래 후계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의 4-H활동을 통하여 인격을 도약하고 농심을 배양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
- 4-H활동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강화 등 지도력 배양으로 지역사회 핵심리더로 양성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4-H활동지원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미래후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교육 운영
- 사 업 량 : 10회 45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8,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인력 양성

## I-18. 새농업기술 강좌 및 농업현장 체험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새로운 농업기술습득 및 리더십 함양교육을 통한 소득안정과 농업인단체로서의 자긍심 고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및농업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새농업기술강좌 및 농업현장 체험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0개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85,8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선진농업현장교육 및 청정 제주감귤 우수성 홍보활동 등
- 새로운 농업기술 조기도입 및 지역농업인에 보급

## I-19.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에게 농업정책, 첨단기술, 최신정보 학습 기회 제공
-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농업경영인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개요

- 위 치 : 농업기술원
- 사업량 : 1개과정 5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6년 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경영·회계·마케팅 등 경영기법, 리더십 과정 등 경영교육 및 해외농업 동향 교육 등 실시

## I-20.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의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국외 선진농업현장 실습교육을 통한 전문농업마이스터 자질 함양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개요

- 위 치 : 농업기술원
- 사업량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국외현장실습 3전공 60명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73,900천원

## I-21. 농업인 전문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농업기술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전문CEO 육성
- 첨단 1차 산업을 선도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역량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 사업개요

- 위 치 : 농업기술원
- 사업량 : 농업인실용화 기술교육 등 10과정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26,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기술교육 : 3과정 2,000명
- 품목별 농업 전문인 양성을 위한 기술보급교육 : 2과정 600명
-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초 농업교육 및 귀농·귀촌교육 : 4과정 500명

## I-22. 원예치료사 양성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실버산업의 최적지로 부각되면서 원예치료에 대한 관심고조
- 원예생활과 기술교육을 통한 원예치료사 전문 인력 양성으로 신체 및 정신지체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고령화 시대 복지농촌 구현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량 : 1과정 70명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세부계획 수립 실시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 강사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 I-23. 농촌관광 경영자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관광과 농업을 접목시켜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

○ 농촌관광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하여 농촌 관광에 대한 서비스마인드 함양과 농촌관광의 전문경영인 양성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량 : 1개소 5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소양과 능력을 갖춘 농촌체험지도사 양성으로 농촌관광 질적 성장을 통한 농촌 관광(마을,농장)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촌자원 가치 상승

○ 제주 관광을 농업, 농촌의 새로운 영역 개발로 향후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

### I-24.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의 필요성

○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양성

○ 친환경농업 등 고객 맞춤형 현장위주의 교육으로 농가애로 사항 해결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 전문교육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동
- 사 업 량 : 60회 4,5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89,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현장 교육 추진 및 교육수료자 DB화 구축

## I-25.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교육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안목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 습득 기회 마련
- 농업 및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능력 함양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교육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2,0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활개선회 및 여성농업인 향토음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 13회 700명

## I-26.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사업의 필요성

- 우리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급식관계관 및 농업인 전문리더를 육성하여 우리쌀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1,2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급식관계관 및 차세대 교육 역량 향상
- 농업인 단체 대상 쌀 가공기술교육 및 관련 교재 제작

## I-27.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능력을 배양, FTA 수입 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현장에서 발생하는 당면영농사항을 해결,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 실시)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 업 량 : 7개과정 8,38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2015년 사업비 : 8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전문 교육과정 운영 평가 : 2014년 11월
- 농업인 전문 교육 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 : 2015년 1월

## I-28. 농기계 교육훈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기계 사용기술 및 경정비, 안전사용 등의 실기교육으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

- 신기종 농기계 확보로 농업인 최신 기술 습득 및 교육 내실화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량 : 교육훈련 10회 300명, 교육훈련장비 구입 2대
- 소요예산 : 62,000천원
- 사업내용 : 신기종 농기계 구입 및 유지 관리비

향후 추진계획

- 농기계 사용 및 자가 정비 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이용기술교육 추진

## I-29. 농업인 소규모 창업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
- 농업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동지역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71,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경제 활성화
- 농업인의 현금 소득 확보 및 농촌정착의지 고취 확대

## I-30.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강화 기반조성
- 소비자 요구에 걸맞은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보급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제조 기술 함양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업량 : 25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교육 및 향토자원 부가가치 증진 기술 교육 추진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제품개발을 위한 실증 및 기술보급의 지속적 추진

## I-31. 농업인 전문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
- 현장밀착형 과학기술 교육으로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구좌, 성산, 표선, 우도
- 사업량 : 50회, 2,5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사업내용 :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 현장실습용 차량 임차 등

### 향후 추진계획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 50회 2,000명(2015년1~12월)
- 농업인 선진농업현장 교육 : 10회 500명(2015년 3월 ~ 12월)

## I-32. 농업인 전문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전국 최고의 원예작물 특성화 권역에 걸맞은 청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기술 보급 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집합·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으로 신지식 전문 농업인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지역 일원
- 사업량 : 3과정 6,500명(농업인 실용화 교육 3,500명, 품목별 전문교육 2,500명, 농업인현장애로 기술 교육 5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47,500천원
- 사업내용 : 농업인 실용화 교육-마을별 수요조사(작목, 인원수) 후 교육실시, 품목별 전문교육(노지감귤, 한라봉 등 만감류 키위 재배기술 교육), 농업인 현자애로 기술 교육(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등 현장교육)

### 향후 추진계획

- 품목별 전문 교육 2회 150명

## I-33. 농업인 전문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전국 최고의 원예작물 특성화 권역에 걸맞은 청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기술 보급 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집합·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으로 신지식 전문 농업인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지역 일원
- 사업량 : 3과정 6,500명
  - 농업인 실용 교육 3,500명, 품목별 전문교육 2,500명,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교육 5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5,500천원
- 사업내용 : 농업인 실용화 교육-마을별 수요조사(작목, 인원수) 후 교육실시, 품목별 전문교육(노지감귤, 한라봉 등 만감류 키위 재배기술 교육), 농업인 현자어로 기술 교육(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등 현장교육)

향후 추진계획

- 품목별 전문 교육 2회 150명

### I-34. 6차산업 활성화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2차, 3차 산업 연계로 지역의 6차산업 활성화 도모
-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상품개발 보급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 활력화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사업내용 :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특산물 가공상품개발 및 교육

향후 추진계획

-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농특산물 가공상품개발 및 교육 20회

### I-35.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교육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농촌지역사회 주체인력으로서 역량 배양
-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 및 가공 기술 보급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8,000천원
- 사업내용 : 마늘, 양배추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교육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지역 농산물가공 상품화교육 : 4회

### I-36.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

사업의 필요성

-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 및 농산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경영 및 신농업지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후계 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6,000천원
- 사업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 사업내용 : 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 I-37. 관광 외국어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 제주관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관광인력 육성 필요
- 날로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관광안내는 물론 관광사업체 통역인력 확충 절실
- ※ 사업시행 근거 : 관광진흥법 제39조

### 사업개요

- 건 명 : 관광 외국어 교육
- 사업량 : 외국어 교육 및 통역안내사 육성 교육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1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관광 외국어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2015년 2월 ~ 12월

## I-38. 이전기업 일자리창출 맞춤형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이전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인력양성에 대하여 산·관·학 네트워크를 구축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안착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권 이전기업 등
- 사업내용 : 수도권 이전기업 수요에 맞는 아카데미 교육 과정 운영 지원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연계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

## I-39.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 사업의 필요성

- FTA의 확대 및 글로벌화된 무역환경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무역 전문 인력의 양성·공급을 통한 수출 특화 인적 인프라 구축 강화, 도내 수출 기업의 수출확대 기반 마련 및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 도모
- ※ 2014년도까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과정」사업의 명칭 변경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대학로 66(아라동) 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 인증 취득을 통한 무역인력 역량 강화
  - 수출마케팅 플랜 발표 워크숍 개최를 통한 제주형 수출 전문 인력 양성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 소요예산 : 178,300천원
- ※ 국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제주대학교 직접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2014년도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운영 : 2014. 7월 ~ 2015년 9월
-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도내 수출기업 취업 연계 추진

## I-40. 사립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우수한 사립 박물관 미술관에 대하여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으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도모
-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와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 향상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 사업개요

- 건 명 : 사립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보조율 70%)

- 사업위치 : 별도 공모에 의해 대상 박물관 미술관 선정
- 사업량 : 10개 내외 박물관 미술관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 공모 및 대상 박물관 미술관 선정 : 2015년 1월 ~ 3월
- 사업 추진 : 2015년 4월 ~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6년 1월

## I-41. 사립박물관 미술관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우수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와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 향상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사립 박물관 미술관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보조율 50%)
- 사업위치 : 별도 공모에 의해 대상 박물관 미술관 선정
- 사업량 : 10개 내외 박물관 미술관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 공모 및 대상 박물관 미술관 선정 : 2015년 1월 ~ 3월
- 사업 추진 : 2015년 4월 ~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6년 1월

## I-42.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회계실무전문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및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회계 등 행정실무에 대한 시설 특성별 현장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강화

###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회계전문 교육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2,25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 시설 등의 회계 및 보조금 관리 강화
- 각종 복지분야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강화

## I-43.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사회적 보상과 인정체계 구축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인력 확보
- 자원봉사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기회 확대
  -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각 협회회의 운영경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사업내용 :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연수사업, 전문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양성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인력 제공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등

## I-44.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시책교육 등 교육훈련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유지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복지 질적 수준 제고
-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및 제42조 (보조금 등)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9,000천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법정지정교육 및 특별교육 등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법정지정교육, 특별교육) 등 추진

## I-45. 안마사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재활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별재활 및 자립자원서비스 제공 등)

사업개요

- 건 명 :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안마사교육 운영 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안마사협회제주지부

○ 소요예산 : 9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42기 8명 2학년 진학, 41기 6명 졸업예정, 43기 10명 입학예정

## I-46.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장애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단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취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심 강화 및 사회현장경험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35명(도내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 희망자)

○ 사업기간 : 여름방학(6월말 ~ 8월말), 겨울방학(12월~2월말)

○ 대상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 주요업무 : 사무 보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또래상담 등

○ 소요예산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동계 방학기간(12월말 ~ 2월)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I-47. 세정대학 교육

필요성

○ 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도민생활에 필요한 조세상식과 사업체 경영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 전국 최초 세정대학(제6기) 운영 활성화로 세정분야 개선사항 발굴

운영개요

○ 교육기간 : 2015년 3월부터(1년 과정)

○ 교육대상자 : 제주도민 60명 내외

○ 교육방법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위탁교육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 ~ 2월 : 제7기 업무협약 체결, 세정대학 원생 모집
- 2015년 3 ~ 12월 : 제7기 세정대학 운영, 세정분야 개선사항 발굴

## I-48.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

사업의 필요성

-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양성과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 실무교육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위탁협약서(제주특별자치도↔한라대학교)

사업개요

- 건 명 : 골프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
- 사업량 : 1개과정 30명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8월(4주)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과정 위탁계약 체결 : 2015년 6월
- 2015년도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과정 교육 추진 : 2015년 7월

## I-49.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대학과 기업체간 연계하여 직업 능력개발 및 전문 역량을 함양한 도민 양성으로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지역 대학
- 내 용
  - 대학-기업체간 협력 고용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략산업 등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등 자립형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영역별로 발굴 추진

## I-50.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취업박람회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취업준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지원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 생애설계에서부터 일의 의미와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공동체 및 조직의 생리와 구성원의 권리 등 책무 이해교육도 필요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실업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보급 시급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청년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업비 : 650,0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 취업준비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취업준비를 위한 상담-교육-정보 제공 원스톱시스템구축, 진로설계와 취업준비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제 운영·지원

2015년도 추진계획

- 취업준비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취업준비를 위한 상담-교육-정보 제공 원스톱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진로설계와 취업준비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제 운영·지원 계획 수립

## I-51.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

### 사업의 필요성

- 양성과정 수료 후 파견되는 연계기관 및 네트워크 기반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 생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청년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업비 : 650,0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 취업준비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취업준비를 위한 상담-교육-정보 제공 원스톱시스템구축, 진로설계와 취업준비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제 운영·지원

### 2015년도 추진계획

- 지역내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학습전문가 양성 배치
- 읍면동 단위 마을로 찾아가는 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기반 구축

## I-52. 고급 환경전문가과정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환경지식과 가치관 배양 및 자발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고 지역의 환경운동을 선도할 인력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간 협약서

### 사업개요

- 건 명 :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업내용
  - 교육기관 :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 교육인원 : 80명 내외(환경관련종사자, 단체회원 등 도민)

향후 추진계획

- 제14기 고급환경전문가과정 2015년도 신입생 모집 : 2015년 1월
-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운영 : 2015년 3~12월

### I-5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각, 농아, 신장)

사업의 필요성

- 시각·청각·언어·신장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 습득, 배양과 취업 적응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사업내용 : 요리교실, 컴퓨터, 제빵교실, 오름등반 등
- 사업대상 : 시각·농아·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강화를 위한 알찬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구

### I-54. 취약계층 직업훈련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 기회제공으로 자활·자립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직업훈련 참가자 2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직업훈련분야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조리사 과정 등
- 소요예산 : 2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직업훈련비 수시 지급

## I-55.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전문자격 취득에 대한 욕구 해소와 취업 촉진 필요
- 일하는 저소득층의 욕구별 교육을 통한 국가·민간 전문자격 취득으로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으로 자활경로 다각화 모색

사업개요

- 대 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전문자격취득 희망자
- 사 업 량 : 2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의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취업 촉진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

## I-56. 자활사업참여者 역량강화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강·단점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자존감 고취 및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 마련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자활참여者 170명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0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층의 자존감 회복을 통한 탈수급 및 자활의 기회 제공

○ 인문학 등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 전환으로 삶의 희망 부여

## I-57.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

○ 사업량 : 여성단체 능력개발 10개 사업

○ 사업내용 : 여성권익향상,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참여 활성화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 2015년 1월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2015년 2월

## I-58.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결혼이주여성을 관광통역안내사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기여

○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 제3항

사업개요

- 건 명 : 결혼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265 6층 (이도2동, 성우빌딩), 제주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사업내용 : 강사를 초청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개설 (국사, 관광자원해설)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연계한 관광통역 실무교육 실시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를 통한 홍보 및 접수
-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교육생 관리

## I -59.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추진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및 보육의 질 향상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건 명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 업 량 :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 보육 시설 견학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어린이집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으로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 지원

## I-60. 창직 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청년취업난과 사회전반적인 실업문제, 고용 없는 성장,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한정적인 직업안에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새로운 직업 창출이 필요한 상황임

※ 창직(創職, Job Creation) : 스스로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여 노동시장에 보급하는 창조적 활동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2015년 7월 및 12월 중 2회 (대학생 등 방학기간 중 운영)
- 대 상 : 고등학생, 대학생 등 교육 수강 희망 일반 시민 등
- 교육내용 :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를 발굴할 수 있는 창직 역량 강화
  - 창직 정의 : 창직의 개요/ 창직 현황, 창직 사례 분석 등
  - 미래 트렌드 분석 창직 : 창직분야 접근법, 창직하는 방법 제시
  - 기업가 정신, 창직가 정신 : 기업가·창직가 정신 교육, 실천방안
  - 창직 기획 및 실제 : 창직 기획(해외 사례 분석 등)
- 소요예산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4월 : 창직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 2015년 7월 및 12월 중 : 창직 아카데미 운영

## I-61.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하고 차별화된 방과 후 교육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살고 싶은 꿈과 희망의 명품교육도시 육성
- 학생들의 흥미, 소질, 적성, 학업능력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 효과

### 사업개요

- 건 명 :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관내 초·중·고교 70개 학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910,000천원

## I-62. 성인·결혼이주민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사업

### 사업의 필요성

-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교재비 등) 지원을 통해 정규학력 미취득 성인·결혼이주민에게 학습기회 확대
- 저학력 성인·결혼이주민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오석학교(서귀포시 중동로 43-2)
- 사 업 량 : 학력보완교육(주5회/10개월/5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3,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5년 12월

## I-63. 진로직업 박람회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진로 및 적성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토대로 진로 선택의 방법과 다양한 진로·직업탐색 기회 제공
- 미래의 직업소개를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의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직업관 형성

### 사업개요

- 대 상 : 도내 중고생, 교사 및 학부모 등
- 사업기간 : 2015년 9월 중
- 사 업 비 : 120,000천원

- 주 최 :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주 관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제주진로진학상담교사연구회
- 주요내용 : 진로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관, 비전키움관, 직업체험관, 진로경연관, 이벤트관 등

2015년도 추진계획

- 진로직업박람회 T/F팀 (행정, 교육청, 진로교사 등) 구성 및 협의 : 2015년 1월 ~ 3월
-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준비 : 2015년 4월 ~ 9월

## I-64.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능력향상비 지급으로 종사자의 근무의욕 및 자긍심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사업개요

- 사업량 : 1,2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 지원기준
  - 도시지역 보육교사 : 월 190천원,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 월 80천원
  - 원장 및 기타 교직원 : 월 140천원
- 소요예산 : 1,440,464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사업 마무리 및 2015년 지원 계획 수립 시행

## I-65.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추진으로 보육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보조 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지원 계획 수립 시행

## I-66. 창업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창업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창업아이템의 사업타당성 분석과 평가로 성공창업 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량 : 청년창업 아카데미 개설(3회), 창업 심화반 운영(2회)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년창업 아카데미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1월
-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및 심화반 개설 : 연중(총 5회)

## I-67. 지역맞춤형 인재양성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유형을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용 창출을 증대하기 위함
  - ※ 사업시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량 :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운영 2회
- 소요예산 : 10,6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1월 ~ 12월

### I -68. 관광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관광 접점별, 상황별로 실전응용 맞춤형 관광서비스 친절아카데미 운영으로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제주관광 친절 만족도 제고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전지역
- 사업량 : 관광접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 100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글로벌 관광서비스 아카데미 및 친절도 모니터링 추진 : 2015년 3월 ~ 12월  
/ 연2회 / 100개소

### I -69.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채용과 인재양성의 기회 제공 및 해소
- 지역재생용 및 인재육성형 사업을 통한 미래지향형 포석  
※ 사업시행 근거 : 2015년 창조지역사업

사업개요

- 건 명 :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Tourism Docent) 육성 사업

- 목 적 : 지역의 관광분야 업종에 실무능력과 마인드를 가진 인재 육성
- 사 업 량 :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 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7년 12월(3개년)
- 소요예산 : 2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관광도슨트 육성 교육 세부 추진 계획 확정 : 2015년 2월
- 관광도슨트 육성 교육 운영 및 평가 : 2015년 3월 ~ 2017년 12월

## I-70. 찾아가는 상인 중국어 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중국관광객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지역 상인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중국어 교육 실시

사업개요

- 대 상 : 구도심 상권에 사업하는 상인들
- 사업기간 : 2015. 3 ~ 12. 31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
- 주요내용
  - 원어민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교육 진행.
  - 단계별 교육운영 및 지하상가내 방송 교육진행

향후 추진계획

- 교육 진행 방법, 운영 및 평가위원 구성 등 : 2015년 3월 초
- 중국어 기본적 발음 및 회화 : 2015년 4월 ~ 5월
- 중국어 일상회화 : 2015년 6월 ~ 10월
- 중국어 현장 실습 : 2015년 11월 ~ 12월 초
- 교육 만족도 조사 : 2015년 12월 말

## I-71. 전입주민을 위한 제주관광의 이해와 관광자원 스토리텔링과정

###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연평균 1만여 명의 인구가 전입하고 있으며 펜션경영 등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따라서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관광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첨병으로 육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도 전입주민을 위한 제주관광의 이해와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 대상 : 타시도 출신 제주 전입주민
- 사업기간 : 2015년 2월~ 12월
- 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
- 주요내용
  - 제주인이 알아야 할 재미있는 관광학과 제주관광산업
  - 제주역사문화의 이해
  - 제주관광자원 스토리텔링

### 향후 추진계획

- 읍·면·동사무소 등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2015년 2월 ~ 3월
- 강좌 개설, 1기수당 50~100명 정도 수용 : 2015년 3월 말 ~ 11월 말
- Feedback을 통한 사업평가 : 12월 초

## I-72. 소물리에 종사인력 양성

### 사업의 필요성

-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의 와인 전문가 수요 급증과 함께 문화관광 전문인력의 고용 능력과 창업의 증대 필요

### 사업개요

- 대상 : 미취업자 및 창업예정자, 장년층(대학졸업예정자 포함)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31일
- 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관광대학교(평생교육원)
- 주요내용
  - 산업체인사 등 우수한 강사를 통한 실전적 이론 및 실무 교육
  -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생 창,취업 발전적 모색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015년 3월
- 교육 시행 : 2015년 5월 ~ 6월 초
- 취(창)업 지원 : 2015년 7월 ~ 12월

### I -73.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인생 2막 설계와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실현
- 학습-일-삶을 연계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학습 선택 교육 기회 제공
- 지역전략산업인 말 산업, 실버산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평생학습 중심 대학 확립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성인학습자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2월
- 사업비 : 209,800천원
- 주 관 : 제주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
- 주요내용
  - <교육>
    - 4050세대를 위한 정규학위과정 개설 및 성인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 지역 수요를 반영한 성인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조직>
    -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성인친화형 첨단 교육환경 조성
  - <제도>
    - 재직자 및 선취업·후진학자의 계속 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의 다양화 및 편입학에 따른 학칙 개정
    - 선행학습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검토 및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제도의 정착화

□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월별 계획

추진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050세대의 관련 산업체 및 지자체 협약을 통한 홍보 네트워크 구축	■	■								
·지역산업체 및 지자체 연계한 4050세대 성인학습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				■				
·홈페이지, 지역 공중파 매체, 현수막, 전광판 게시를 통한 지역사회 성인학습자 대상 홍보	■	■			■	■				
·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 기수강생 및 온라인 회원 대상 교육 홍보 문자 전송 및 메일 발송	■	■			■	■				
·평생학습박람회 및 지역 평생학습축제 홍보 부스 설치							■	■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과정 입학 설명회 개최							■			■
·취업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단 운영			■	■	■	■	■	■	■	■
·직업 상담사를 활용한 전문 취업 상담 제공			■	■	■	■	■	■	■	■
·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								■	■	
·성인 중심 취·창업 현장실습 및 인턴십 모델 개발 및 운영			■	■	■	■	■	■	■	
·취업 동아리 경진대회					■	■		■	■	
·취업 및 창업특강				■	■			■	■	

추진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업 및 창업 동아리 지원			■							
·창업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단 운영			■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			■	
·Post 취업 및 창업 멘토단 운영									■	
·취창업 카페 설치 및 운영			■							
·Total Recall System 운영							■			
·자체평가					자체			외부		종합
			■			■			■	
·컨설팅			■			■			■	
·수요조사					■				■	
·만족도 조사					■				■	



## 제 2 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 II-1.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에 맞는 품목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2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대학교, 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7개 품목전공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64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수료생 대상 농업마이스터 자격 취득 후 후계농 지도 및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 현장교육 등 자격부여
-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 확립  
- 교육생 수준 및 학기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

## II-2.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 교육기관 및 전문성 있는 강사의 부족으로 경제교육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 민간 경제주체들이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경제생활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

### 사업개요

- 운영기관 : 제주대학교(2009. 8월 기획재정부 지정)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165,000천원
- 주요내용  
- 제주지역 도민, 청소년, 교사 등 대상별 특화 경제교육

-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소외계층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

향후 추진계획

- 제주지역특성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 II-3. 농기계 교육장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업기계화 촉진 위한 교육훈련, 대여 장소로 활용되는 농기계교육장 운영관리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 교육장 운영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장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4,1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대여농기계 운영 관리 및 출고 전 안전사용 교육
-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 II-4.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사업의 필요성

- 일상생활에 제주어 사용 활성화를 통한 사라져 가는 제주어의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어학교를 개설하여 초·중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 제주어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사라져가는 제주어 보전 활성화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위 치 : 제주대 국어문화원

- 사업량 : 20명
- 내용 : 의식주로 배우는 제주어, 속담 및 세시풍속으로 배우는 제주어 등
- 주관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추진계획

-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사업계획 수립

## II-5.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난 2010년 3월 13일 개관한 제주문학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학프로그램 운영 등 문학학교를 운영하여 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창작활동 활성화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사업개요

- 위치 : 제주시 건입동 1038-5, 제주문학의 집
- 사업량 : 문학학교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6년 2월
- 주관 : 제주문학의집운영위원회
- 소요예산 : 1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제주문학 자료 수집 전시 등 제주문학관 조성

## II-6.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지역기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를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 및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간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 및 동반가족
- 사 업 량 : 토요 문화학교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주 관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제주문화예술재단)
- 소요예산 : 39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지역기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대상 토요 문화학교 운영 지원 사업 공모 심사 후 선정
- 2015년 사업 추진

## II-7. 탐라선비문화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선비문화학교 학습 체험을 통한 우리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윤리 규범에 대한 필요성 습득 및 세계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하여 국제 자유도시 완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탐라선비문화학교
- 사업주관 : 성균관유도회 제주특별자치도본부
- 위 치 : 도내일원
- 사 업 량 : 향교 제례 습의, 논어 경전 읽기 등 프로그램 1식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16,7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월 ~ 2월 : 탐라선비문화학교 계획수립 및 사전 준비
- 2015년 3월 ~ 12월 : 제2회 도민대상 ‘탐라선비문화학교’ 개최

## II-8.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유학을 이끌어나가는 청·장년 대상의 유교 경전 교육을 실시하여 유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비영리법인 규칙,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 사 업 량 : 도민 100여명 대상 강좌 교재비 및 강사비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추진 : 2015년 2월 ~ 12월

## II-9. 창의마당·생태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일 학교 밖 체험활동으로 생활과학, 자연생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의력과 인성교육을 높여주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 사업개요

- 건 명 : 창의마당·생태교실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 업 량 : 연 10회
- 소요예산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박물관적 요소를 벗어나 과학, 미술, 음악, 마술,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복합하여 점차 확대 운영하고자 함

## II-10. 승마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말 산업 특구 지정,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승마산업 집중육성
-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승마산업 활성화 및 승마 관광객 유치 여건 조성
- ※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 사업개요

- 건 명 : 승마교실 운영
- 위 치 : 봉개동 외 제주시 승마장 2개소(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 사업량 : 초·중생 및 장애인 80명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8월(방학기간 중 30일간)
- 소요예산 : 3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승마교실 운영 추진 : 2015년 7월 ~ 8월

## II-11.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가정 및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
-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확대와 생활체육을 바르게 보급시켜 정착시키는데 기여
- ※ 사업시행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 제5조

###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 위 치 : 제주도내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12월 : 도생활체육회, 행정시생활체육회 교실 운영(안) 수립 및 제출
- 2015년 3월 ~ 12월 : 종목별생활체육교실 운영

## II-12. 노인대학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노인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노인대학원 운영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7길 3(삼도2동)
- 사업량 : 1개소 · 300명(1년 100명, 2년 100명, 3년 100명)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사업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경화)
- 사업내용 : 강사료, 교육운영비 등
- 소요예산 : 7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노인대학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 II-13. 노인대학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노인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7길 4(삼도2동)
- 사업량 : 1개소 · 300명(1년 100명, 2년 100명, 3년 100명)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경화)
- 사업내용 : 노인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 발간 등
- 소요예산 : 11,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노인대학원 운영 지원

## II-14.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재외 제주도민 자녀들에게 발전하는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 제공으로 애향심 고취
- 재외도민의 글로벌 인재 활용을 통한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로 고향 발전의 역할 기대

사업개요

- 사업량 : 2개 과정
- 사업기간 : 2015년 8월, 10월(재외도민 대학생반, 임원반)
- 소요예산 : 12,78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 재외도민 향토학교 대학생반 운영 : 2015년 8월중
- 2015 재외도민 향토학교 임원반 운영 : 2015년 10월중

## II-15.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들에게 외국어 사이버교육 지원을 통해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외국어 학습 기회 제공
- 다양한 어학 콘텐츠 제공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교육효과 제고

사업개요

- 사업량 : 영어·일본어·중국어 사이버 어학 강좌 운영
  - 회화 및 청취, 비즈니스, 시험대비 및 어린이 영어 등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소요예산 : 27,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이버 외국어교육 계획수립 및 위탁계약 : 2015년 1월
-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및 관리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II-16. 생활외국어 포켓북 제작

사업의 필요성

- 관광업종사 도민의 외국어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회화내용을 휴대용 소형 책자로 제작 보급
- 도민 글로벌 외국어역량 강화 및 국제화 능력 함양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외국어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생활외국어 포켓북 제작(제주소개, 관광·숙박·교통 등 외국인 안내 기본회화)
- 사업량 : 포켓북 1,500부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생활외국어 포켓북 제작 계획 수립 : 2015년 2월
- 2015년도 생활외국어 포켓북 제작 추진 : 2015년 3월 ~ 8월
- 2015년도 생활외국어 포켓북 제작 배부 : 2015년 9월 ~ 10월

## II-17.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상설 교육장을 활용한 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정보화교육으로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도민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
- 도민들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운영으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개요

- 위 치 : 도민정보센터 및 읍·면·동 지역 정보화 교육장
- 사 업 량 : 도민정보센터 50회·1,000명, 찾아가는 교육 20회·24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21,1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교육결과 분석 및 2015년 도민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 2014. 12월
- 도민정보센터 및 찾아가는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 : 2015년 1월~12월

## II-18. 제주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

사업의 필요성

-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평생교육의 지원 체제 구축 등 평생교육 세부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이 계획 수립을 위해 도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기관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제18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 지역 평생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
- 위치·사업량 : 제주도 전 지역, 학술연구용역 1식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5월(4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학술 연구용역 시행 : 2015년 2월 ~ 5월(4개월)

## II-19. 문해교육기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상실한 소외계층에 대

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진작시켜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제3항, 동 시행령 제72조

사업개요

- 건 명 : 문해교육기관 지원
- 위 치 : 문해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5개소 등
  -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가간학교, 서귀포오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등
- 사 업 량 :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문해교육 인문소양 · 문화예술 등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

## II-20. 문해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의 필요성

- 문해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욕구 진작과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 체계 확립

사업개요

- 건 명 : 문해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사업
- 위 치 : 문해교육기관 5개소
- 사 업 량 : 문해교육기관 시설보수, 교육기자재 보완 등 교육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문해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 개선으로 학습욕구 진작

## II-21.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으로 제주의 특화된 평생교육 홍보
- 지자체,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기관단체 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 활용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 체험관 운영
- 개최도시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사 업 량 : 홍보 체험부스 설치·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0월중
- 소요예산 : 20,000천원

## II-22. 제주평생교육정보 (다모아)시스템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정보 습득을 실시간으로 제공
-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통계 데이터 수집을 위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평생교육정보(다모아)시스템 운영
- 사 업 량 : 시스템유지보수 및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7,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들의 가입확대
- 시스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내 자료 확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실명확인 시스템 수정·보완

## II-23.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기능강화

###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평생교육 연구·조사·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으로 도민의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1조

###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위 치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제주발전연구원 내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방법 : 제주발전연구원에 지정 위탁운영(2012.7월)
- 사업기간 : 2015년 1. 1. ~ 12. 31(1년)
- 소요예산 : 5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진흥원 허브기능(총괄 조정·지원)을 위한 기능강화 방안 마련
- 도 단위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추진으로 도민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 II-24.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물밑듯이 밀려오는 중국 관광객 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어 학습 인프라 확대 구축
- 중국어교육 확대로 중국관광객들에게 즐겁고 편한 관광제주 환경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진흥조례 제1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 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1식(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제주시,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II-25. 평생학습 권역화 거점시설 지정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원하는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생활공간에 위치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의 일상화 유도
- 도민 개개인의 역량강화로 도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초석 마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 전지역(권역별 1개소 이상 지정·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업비 : 250,0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 생활권역 단위 평생교육 실태 조사, 평생학습 권역 및 거점시설 선정, 읍면동 단위 평생교육사 배치,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

2015년도 추진계획

- 생활권역 단위 평생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
- 평생학습권역 및 거점시설 지원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지원
- 평생교육사 배치 계획 수립, 평생학습권역 거점 주민자치센터 우선 배치
- 행복학습센터 시범지역 선정 및 설치, 행복학습 매니저 배치

## II-26.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녹색산업과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 제주의 디자인 교육 인프라 개선으로 제주 디자인 산업발전 및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량 :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988,800천원
- 운영기관 : 제주대학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3월 :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 지원(3차년)
- 2015년12월 : 사업성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 2016년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 지원 (최종, 4차년)

## II-27.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간판디자인에 대한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능력 및 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하고,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개요

- 사업량 : 간판 디자인학교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9월
- 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3월 ~ 4월 : 간판개선사업 선진지 견학 및 간판문화학교 운영

## II-28.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최근 급변하는 관광산업에서 관광객들의 제주도 관광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 교육뿐만 아니라 친절서비스 향상 등 다각적인 면에서 운수종사자들의 능력 함양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맞춤형 교육 전개로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운전 행태의 개선과 안전운전 의식 함양

- ※ 사업시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
- 대 상 : 도내 57개 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교육시기 : 2015년 5월 ~ 7월
- 지원방법 : 교육비 70% 지원
- 교육장소 : 전세버스 조합 교육실 및 전세버스 업체 교육실
- 교육내용
  -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어 기본 회화 교육
  - 안전운행 수칙 및 탑승객을 위한 안전운전 교육 및 친절교육
- 사 업 비 : 17,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 II-29. 제주환경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환경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 운동을 선도할 환경전문가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환경대학 운영지원(환경보전지도자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수행자 : (사)제주환경연구센터
- 소요예산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18기 환경보전지도자과정 수강생 모집 : 2015년 1월
- 환경보전지도자과정 운영 : 2015년 3월 ~ 12월

## II-30. 기후변화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통한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후변화교육 민간단체에 운영비 지원
- 교육을 통한 생활 속의 온실가스 줄이기 등 기후변화 대응 실천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교육·홍보)

### 사업개요

- 건 명 : 기후변화교육 운영비 지원
- 사 업 량 : 기후변화교육 운영비 지원 1식
- 사업내용 : 기후변화대응 교육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4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기후변화대응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2015년 1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 : 2016년 1월

## II-31. 안보교육

### 사업의 필요성

- 북한정세와 안보, 자주국방 등 안보교육으로 올바른 국가관 확립
- 새터민, 통일·안보 전문가 등 우수강사 위촉하여 민방위대 안보교육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사업개요

- 건 명 : 안보교육 강사수당
- 사 업 량 : 민방위대 안보교육 강사(70명) 수당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민방위 안보교육 전문 강사 위촉 및 교육·훈련 70회 운영

## II-32. 실전 체험훈련 교육

사업의 필요성

- 민방위 상황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실전체험 교육 강화로 정예 민방위대 육성
- 화생방, 응급처치, 전기·가스·교통안전 등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체험·실습 교육 실시

※ 사업시행 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사업개요

- 건 명 : 실전체험훈련장 강사수당
- 사 업 량 : 실전체험훈련장 체험·실습강사(284명) 수당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8,993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민방위 실전체험교육 전문 강사 위촉 및 교육·훈련 290회 운영

## II-33.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사업의 필요성

- 제주시의 평생학습 도시조성 성과와 활동을 전국으로 홍보
- 전국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킹 구축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업개요

- 건 명 :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 위 치 : 추후 결정
- 사 업 량 : 홍보관운영, 체험프로그램, 작품전시, 사례발표, 무대공연 등 참가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1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7월 ~ 9월 : 축제참가에 따른 관련 업무추진
- 2015년 10월(예정) :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홍보관 운영

## II-34. 평생학습관 환경개선 사업

사업의 필요성

- 평생학습관 환경개선 정비로 쾌적한 교육 환경 분위기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3조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사업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업량 :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8월
- 소요예산 : 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설 계 : 2015년 2월 ~ 3월
- 발 주 : 2015년 4월
- 공사기간 : 2015년 5월 ~ 8월

## II-35.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사업의 필요성

-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 범시민 독서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선진시민의식 함양
- 단위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로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독서생활화로 평생학습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및 예산 편성지침

사업개요

- 건 명 :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 위 치 : 제주시 오현길 14(이도1동)
- 사 업 량 : 95개소(읍·면지역 47개소, 동지역 48개소)
  - 우수단위문고 20개소, 청소년공부방 12개소, 특수문고 4개소, 일반문고 59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29,1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

## II-36.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사업의 필요성

-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결과물 발표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전 시민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지역종합 평생학습대회 개최로 평생학습 진흥 및 발전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평생학습 대회 개최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홍보관 운영, 체험프로그램, 작품전시, 사례발표, 동아리공연 및 시상 등
- 사업기간 : 2015년 8월 ~ 11월
- 소요예산 : 1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8월 ~ 10월 : 계획수립 및 참가기관 모집
- 2015년 11월(예정) :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 II-37. 직장인 평생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직장인의 자기개발과 퇴근 후 건전한 여가 활동
- 학습 기회 확대로 근로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 사업개요

- 건 명 : 직장인 평생교육 강사수당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홈페이지, 생활푸드 등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2월 ~ 12월 : 강좌개설 및 모집 공고, 프로그램 운영
- 주 5회 운영(19:00 ~ 21:00)

## II-38. 직장인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직장인들 중심의 동아리 그룹 활동 육성을 통한 여가 활용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 사업개요

- 건 명 : 직장인 그룹활동 강사수당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포크기타, 서예 등 평생학습 강좌 강사수당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3월 ~ 12월 : 강좌개설 및 모집 공고, 프로그램 운영
- 주중 19:00 ~ 21:00 / 주말 운영

## II-39. 열린시민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평생학습강좌 실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교육 기회 제공으로 가정생활의 활력 증대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 사업개요

- 건 명 : 열린시민교육 강사수당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몸살림스트레칭, 자연염색 등 13개 강좌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3월 ~ 12월 : 강좌개설 및 모집공고, 프로그램 운영
- 주 5회 / 10:00 ~ 12:00

## II-40. 전통공예과정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평생학습 강좌 운영
-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전통공예과정교육 강사수당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갈천을 이용한 공예품제작, 제주야생화·꽃차 제조 과정등 5개 강좌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3월 ~ 12월 : 강좌개설 및 모집공고, 프로그램 운영(주5회 운영)

## II-41. 농촌현장포럼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현장 포럼을 통하여 마을자원 및 주민 역량 분석, 마을발전 과제 발굴 및 보완 등으로 마을사업 효과성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 업 량 : 4개 마을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9,000천원
- 지원내용 : 농촌 현장포럼 운영경비 지원
  - 포럼운영기관 :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포럼내용 : 주민 아이디어 토대로 마을발전과제 발굴, 마을 자원 및 주민 역량 분석, 전문가 종합점검을 통한 마을 발전과제 보완 등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통보(도) 및 사업신청서 접수 : 2015년 1월 ~ 3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 2015년 4월 ~ 12월

## II-4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에게 아동발달 영역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2014년 드림스타트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사업개요

- 건 명 : 드림스타트프로그램운영비
- 사 업 량 : 48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드림스타트 부모 취미교실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

## II-43. 드림스타트 영역별 서비스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 전 읍·면·동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에게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영역별 프로그램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2014년 드림스타트사업안내(보건복지부)

사업개요

- 건 명 : 드림스타트 영역별서비스지원
- 사 업 량 : 48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9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수학여행, 요리교실, 댄스교실, 가족 캠프프로그램 등 운영
- 사례관리대상자를 읍·면·동별로 15명 이상을 선정 관리하며 프로그램운영시 지역별로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

## II-44.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전문적인 노인대학 및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 노인대학 기능 혁신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전담관리자 1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12월
- 소요예산 : 15,2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15년 1월

## II-45.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기능을 혁신하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전담관리자 2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2월
- 주요 사업내용
  -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파악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만족도 조사
- 소요예산 : 5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별 이용실태 욕구 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점검

## II-46. 늘푸른대학 기능보강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제주시 관내 노인교실(늘푸른대학)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노후시설 기능보강으로 노인교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시설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사업개요

- 사업량 : 1개소 (늘푸른대학 노인교실)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노인교실 강당 개보수 등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월 중 늘푸른대학(노인교실) 기능보강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II-47.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여성들의 교육함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여성인재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2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 교육대상 : 제주시 거주여성 100명
- 교육내용 : 리더십, 대화기법, 제주역사, 경제, 관광 등
- 운영방법 : 제주대학교(평생교육원) 위탁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15년 1월
- 수강생 모집 : 2015년 2월
- 개강 및 운영 : 2015년 3월 ~ 12월

## II-48. 참사랑문화의집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내실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참사랑문화의집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9길 17(이도1동) 참사랑문화의집
- 사업량 : 12개 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 사업기간 : 2015년 1월~12월
- 소요예산 : 44,56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프로그램 성과물 작품전시회 행사 : 201년. 12월
-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수강생 모집 : 2015년 1월
-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2월 ~ 12월

## II-49. 서부 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32%이며, 그중 한림읍은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외국인 비율 11.2%)으로 한국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 접근성 문제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부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 제3항

사업개요

- 건 명 : 서부 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2층
- 사업내용 : 서부 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비(한국어교육)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대상 수요 조사 및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프로그램별 보조금 신청 접수 및 보조금 교부

## II-50.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아동들에 대한 보육기능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 사 업 량 : 읍면지역 어린이집 65개소
- 지원기준 : 정원별 차등 지원(개소당 1,300천원~1,700천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87,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읍면 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

## II-51.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의 열정과 창의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 공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및 제11조

### 사업개요

- 건 명 :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21-1(건입동)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9개소
- 사 업 량 : 공공청소년시설 9개소 프로그램 차등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8,3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의 끼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시행

## II-52. 문화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시민들에게 문화지식과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주문화원 주관의 문화대학 운영 지원을 통한 시민평생교육의 장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 국가·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육성

### 사업개요

- 사업량 : 제주문화원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주요 강좌 프로그램
  - 고려시대 이후 제주사, 제주마의 역사와 문화, 제주의 지명유래, 제주 신화 전설, 제주 인물, 제주문화의 이해, 유적 답사, 특강, 세미나
- 소요예산 : 18,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월 : 연간 대학 강좌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2월 : 수강생 모집 등
- 2015년 3월 ~ 12월 : 대학 운영

## II-53.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전통문화, 향토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호사상을 함양시키는 시민문화 교육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역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함.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역사박물관대학운영
- 위 치 : 제주시일원
- 사업량 : 30강좌(수강생 12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월 ~ 2월 : 위탁협약(운영계획 수립 및 협약)
- 2015년 3월 ~ 12월 : 역사문화 박물관대학 운영

## II-54. 전통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사라져가는 우리고유 전통문화의 원형 보존 및 체계적 전승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보 및 우수성을 선양하고자 무형문화재 관련 전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1조(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전통학교운영
- 위 치 : 제주시일원
- 사업량 : 4강좌, 50명(갯일, 망건, 탕건, 제주농요)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3월 ~ 12월 : 전통학교 운영 및 시연(작품전시)준비

## II-55. 살아 숨 쉬는 제주향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서원, 향교를 활용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비지원 공모프로그램 사업임.
- 제주도 기념물 제2호 제주향교를 생활 공감형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2015년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 계획

사업개요

- 건 명 : 살아 숨 쉬는 제주향교
- 주관기관 : 제주향교
- 위 치 : 제주시 서문로 43(용담일동)
- 사업량 : 제주향교 활용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14개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2015년 2월 ~ 11월 : 사업운영
  - 2015년 12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II-56. 도서관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통문화 및 향토사를 바르게 알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은 물론 책 읽는 시민의식 함양
- 세계 속의 제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평생교육의 장 마련

사업개요

- 건 명 : 도서관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시 정존2길 43(노형동)
- 사업량 : 품격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중심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연중)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서관대학 종합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1~2월
- 도서관 대학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3~12월

## II-57. 농업성공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FTA 대응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추진
-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과 정보 교환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욕구에 부응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및 제24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지역농협 7개소
- 사업량 : 교육인원 420명(농협별 6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87,500천원
- 지원내용 : 지역농협 농업성공대학 운영 경비 지원(강사료, 교재 유인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2월 : 지원계획 수립
- 2015년 3월 : 학생 모집 및 교육생 선발 등
- 2015년 4월 ~ 12월 : 농업성공대학 운영

## II-58. 찾아가는 수산대학 시범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어업인들이 변화하는 수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FTA 대응 방안 모색과 소득 증대 효과 거양 및 전문기술 습득과 정보 공유
- 생산자단체,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생업연장선의 평생교육 실현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 사업개요

- 위 치 : 1개소 (제주시, 한림, 추자, 양식수협) 중 희망수협 선정
- 사업량 : 강사수당 및 운영비 1식 (수강생 5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원계획 확정 및 수강생 모집 : 2015년 1월 ~ 2월
- 수산대학 운영 추진 : 2015년 3월 ~ 10월

## II-59.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실용 교육 실시  
※ 사업시행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및 제주양돈농업협동조합
- 사 업 량 : 2개분야 100명(한우 50명, 양돈 5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결과 피드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은 축산인의 의식·실력·마인드 선진화 도모

## II-60.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 의식 함양  
학습의 장으로 활용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사업개요

- 대 상 :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1,000천원
- 내 용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운영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주민자치학교 운영 계획수립 및 운영 : 2015년 1월 ~ 12월

## II-61.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속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5개분야 / 45개 과목 / 3,000여명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소요예산 : 67,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2015년 1월 ~ 12월

## II-62.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사업의 필요성

-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에게는 역량 강화 기회 제공하여 배우고 나누고 참여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 권장)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사 업 량 : 평생학습 홍보·체험·전시관 운영 및 무대경연 대회 등

- 사업기간 : 2015년 9월 ~ 10월
- 소요예산 : 25,74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 2015년 9 ~ 10월(2일간 예정)
  - 평생학습 홍보·체험 전시관 부스 및 부대행사 등 운영
  - 평생학습 동아리 무대경연대회 및 우수사례발표경연 등

## II-63. 여성문화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자기계발 및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재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운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제14조

사업개요

- 사업량: 7개 분야 80개 과정
- 사업기간: 연중
- 소요예산: 1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형 프로그램 운영: 연중

## II-64.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
- 공무원의 행정업무 및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화 역량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조례 제23조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15년 1월 ~ 12월
- 교육대상 : 지역주민, 서귀포시 공무원

- 교육장소 : 본청 정보화교육장, 마을정보사랑방 17개소, 정보화마을 8개소 등
- 소요예산 : 33,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강화
-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로 공무원의 정보활용 능력 배가

## II-65.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및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하여 질 높은 학업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7개소(노인대학 6, 대학원 1)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강사료, 간식비, 프로그램운영비 및 수료식 경비지원 등
- 소요예산 : 231,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2월 노인대학 및 대학원 졸업식 및 신입생 모집

## II-66.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여성들의 자기개발 및 리더십, 지역문화 바로알기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사업시행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21조의 2

사업개요

- 사업량 : 150명 / 강의 12회, 문화체험 1회
- 사업기간 : 2015년 5월 ~ 12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교육 참여율 제고
- 운영기간 및 교육 횟수 확대 등을 통해 만족도 향상에 주력

## II-67. “같이함께 최남단글로벌 다문화창조학교” 개설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생활 정착을 위한 문화 및 한글, 영농교육 학교 개설 및 지역 내 단체 연계·협력모델 제시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4 창조지역사업 공모선정 사업

사업개요

- 사업주체 : 대정읍(수행기관 :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16,000천원

## II-68.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역사 및 제주문화와 예술 등의 강좌개설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애향심 고취와 제주를 새롭게 이해시켜 나아가자 함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12월(1학기, 2학기)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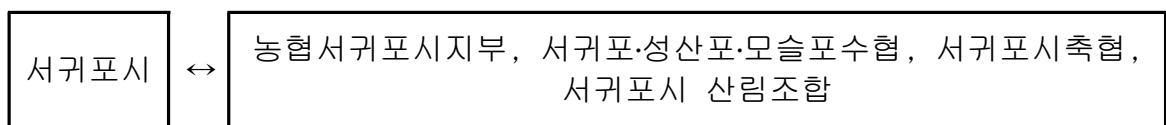
- 문화대학 학생 모집 및 개교 : 2015년 3월

- 문화대학 운영 : 2015년 4월 ~ 12월(1학기, 2학기 운영)

## II-69.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한미·한중 FTA 체결 등 다양한 수입개방화시대에 능동적 대처하고 1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전문 경영인 양성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연중
- 장 소 : 각 대학별 회의실 또는 세미나실
- 주 관 :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수협, 서귀포시축협, 산림조합
- 수강인원 및 교육과정 : 200명(각 대학별 50명), 전문교육 및 현장학습 등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제4기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 세부운영 계획 확정 : 2015년 1월
- 대학별 개강 및 운영 : 2015년 3월 ~ 10월

## II-70.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기회 제공
-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연수로 담당자의 자질 향상

- 지역축제 개최 및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로 평생학습 이해 증진

사업개요

- 대 상 :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 업 비 : 235,35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학생문화원
- 주요내용
  - 평생교육프로그램(평생교육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 평생교육기관 협의회 개최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조직·운영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강좌 운영(상·하반기 각 3개 강좌, 8개 강좌 운영)  
: 3월 ~ 7월, 9월 ~ 12월
- 평생학습동아리(12개 동아리 운영) : 3월 ~ 12월
- 평생교육기관 협의회 개최 : 4회(4월, 7월, 10월, 12월)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조직·운영 : 25개 기관, 70명
- 제4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0월
- 제주지역 평생학습축제 참가 : 11월

## II-71.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운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

사업개요

- 대 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 업 비 : 163,470천원

○ 사업주관 : 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인의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습동아리 활동 확대 및 지역문화 사랑방 역할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6개 평생학습관, 연중 운영
-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6개 평생학습관, 연중 운영
- 제4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여 : 10월(예정)
- 제주지역 평생학습축제 참가 : 11월(예정)

## II-7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 및 소외계층 등 교육취약 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6개 시설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업비 : 180,350천원
- 사업주관 :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 계획 마련 : 1월
- 보조금 지원 : 1월 ~ 2월
- 보조금 정산 : 12월

### 제 3 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Ⅲ-1.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트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낮은 임금과 취약한 근로여건으로 인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트랙 설계 제공으로 취약계층 취업 성공률 제고
- 교육과 직업경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생애주기 및 상황에 맞는 직업설계 시범운영으로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제주수놓음일자리지원센터
- 주요내용 :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관리형 직업설계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비 교부 : 2015년 1월

### Ⅲ-2. 귀농귀촌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위 치 : 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귀농교육과정 운영(2과정)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귀농귀촌교육 : 2과정 200명
- 귀농자영농지원프로그램 운영 : 2과정 200명

### Ⅲ-3. 귀농귀촌 및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사업의 필요성

- 귀농 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장입주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귀촌 및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동
- 사 업 량 : 귀농귀촌 교육 16회 700명,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3명(5개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귀농귀촌 교육 신청접수 및 현장실습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15년 3월

### Ⅲ-4.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사업의 필요성

- 쌀 중심의 식생활 패턴변화와 관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쌀 가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
-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 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식생활 정착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 남원읍 하례리)
- 사 업 량 : 10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2015년 사업비 : 11,2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쌀을 이용한 미각교육, 한식양념장 등 우리 쌀 이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농업인이 소비자에게 쌀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전문 리더 양성

### III-5. 귀농귀촌 대상자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귀농(희망)인-귀농 희망지역 기술보급전문가-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 농업기술+농업경영+창업까지 일관화 된 맞춤형 학습 실시
- 선도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의 농장에 입소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 과정을 전수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 업 량 : 귀농귀촌교육 희망자 6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2015년 사업비 : 1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귀농귀촌 대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
- 사업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 : 2015년 1월

### III-6. 귀농귀촌교육 현장 실습

####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자 및 귀농희망자에게 지역 선도농업인 연계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영농현장실습을 통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 \* 선도농업인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일정조건을 갖춘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생 등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관할지역내
- 사 업 량 : 귀농 영농현장 실습지원 4명(1인 최대 5개월 현장실습)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2015년 사업비 : 2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 : 2015년 1월
- 연수생과 선도농가 네트워크 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자율 모임체 운영 지도

### Ⅲ-7. 귀농귀촌 현장실습

사업의 필요성

- 귀농 귀촌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사업개요

- 위 치 : 구좌, 성산, 표선, 우도
- 사업량 : 4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4,000천원
- 사업내용 : 귀농 영농현장 실습지원

향후 추진계획

- 귀농영농현장실습 대상자 선정 및 현장교육 추진 안정적 영농정착

### Ⅲ-8. 귀농귀촌 영농현장 실습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자 및 귀농희망자에게 지역 선도농업인 연계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영농현장실습을 통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농업기술센터 담당지역
- 사업량 : 귀농 영농현장 실습지원 4명(1인 최대 5개월 현장실습)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4,000천원
- 사업내용 : 연수생 및 선도농가 연계 영농기술 등 현장실습교육 보상  
- 지원기준 : 귀농연수생 800천원/월, 선도농가 400천원/월

향후 추진계획

- 귀농영농현장실습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15년 2월

### III-9. 에너지 교육 및 Workshop 연수

사업의 필요성

- 에너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에너지정책 수립과 에너지 절약사업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건 명: 에너지 교육 및 Workshop 연수
- 위 치: 도 일원
- 사 업 량: 에너지 교육·연수 12명 내외, 워크숍 2회 등
- 사업기간: 2015 1월 ~ 12월
- 소요예산: 16,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 지방비 50%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 담당 공무원 연수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 2015년 1월 ~ 3월
- 에너지 교육 및 공무원 연수 : 2015년 4월 ~ 10월
- Workshop 연수 등 : 2015년 3월 ~ 12월

### III-10. 귀농귀촌인 농촌 재능기부 및 교육프로그램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재능 나눔운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과 상생하는 계기 마련
-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과 자발적인 참여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지원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 사업대상 : 도내 귀농귀촌인
- 사업내용 : 재능기부에 필요한 자재, 임대료, 교재 제작비, 강사료 등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지원 사업 계획 및 지원지침 수립 : 2015년 2월
- 지원 사업 추진 및 정산 : 2015년 3월 ~ 12월

### III-11.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연안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연근해어선 원거리 조업 증가 추세로 어선 안전 사고 자주 발생
-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어선안전조업 체험 교육 필요
  - ※ 지원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사업개요

- 건 명 : 어선안전조업 체험 교육 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 사업량 :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015년 2월
- 사업자선정 : 2015년 3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2015년 4월
- 완료 및 정산 : 2015년 12월

### III-12. 수산질병 방역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 방역에 관한 교육 실시
- 질병관리 능력 함양 및 위생의식 제고를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8조

#### 사업개요

- 위탁기관 :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 교육대상 : 도내 양식어업인 및 종사자 500여명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4월
- 사업비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세부시행계획 수립 : 2015년 1월
- 협약 체결 및 사무위탁 시행 : 2015년 1월
- 사업 시행 : 2015년 1월 ~ 12월

### III-13. 평화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평화교육으로 세계평화의 섬 도민의 자질향상과 선진화된 의식함양
- 평화에 대한 의식변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세계 평화의 섬 개념정립 및 평화 문화 정착을 통한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 최초시행시기 : 2006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5조, 세계평화의섬범도민회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평화아카데미 강좌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사업비 : 60,000천원

- 대 상 : 일반도민
- 주 관 :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및 언론 등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강좌 계획수립 및 업무협의 : 2015년 1월 ~ 2월
- 2015년 평화아카데미 개강 및 운영 : 2015년 3월 ~ 12월

### III-14.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오·남용 방지를 통한 건전사회 육성 도모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사)국제사회복지연구소(소장 임주리)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1,000천원
- 사업내용 : 약물 오·남용 예방 청소년교육, 에이즈 예방 등

향후 추진계획

- 각종 약물 정보의 올바른 이해, 상담 및 예방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 마련

### III-15. 공동 모금회 희망나눔 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자라나는 아동들의 올바른 나눔 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나눔 교육 추진으로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 도모
-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및 제33조 (보조금 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고승화)

- 소요예산 : 총 33,000천원
- 사업내용 : 희망나눔 교육사업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공동모금 홍보 및 모금사업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주력
-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즉각적인 배분사업 추진으로 주민체감 상승효과 제고

### III-1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위기 청소년과 지속적인 상호교류, 정서적 지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양명희)
- 사업량 : 동반자 10명
  - 활동기간 : 대상 청소년 1인당 평균 3개월(최장 6개월)
  - 활동내용 : 정서불안, 자신감결여, 비행행동, 학습부적응 상담 등
- 소요예산 : 116,0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월간 슈퍼비전 및 문화체험 실시, 대상자 발굴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

### III-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 학업지속 및 자립의욕 고취
-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양명희)

- 소요예산 : 215,940천원
- 사업내용 :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종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향후 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 학업지속 및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자립 동기 강화 과정, 자립기술 습득과정 등 지속 운영

### III-18.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사업의 필요성

-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복지시책 필요
- ※ 사업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

사업개요

- 건 명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 사업량 : 경로당별 월 1~3개 → 월 2~4개로 확대 보급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도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소요예산 : 7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실태 및 설문조사(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보급 경로당 선정

### III-19.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는 경로당회원 중 『재능』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와 동시에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 프로그램 보급 운영을 자원봉사(무보수)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료준비 등에 경비가 소요되어 이를 보전함으로써 질 높은 프로그램 보급을 유도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

사업개요

- 건 명 :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 사 업 량 : 50명 (프로그램 보급요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소요예산 : 24,000원

향후계획

- 본 사업은 2018년까지 도내 407개소 전체 경로당에 1명씩 자체 강사 육성 배치

### III-20. 제주치료교육협회 치료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부모교육

사업의 필요성

- 장애아동을 둔 부모, 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장애아동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잠재력을 치료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 및 치료사 역량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치료교육협회 치료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부모교육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제주치료교육협회(회장 손기욱)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맞벌이 부모가 많아짐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 부모양육코칭 및 재가방문 진단평가를 통한 치료방향 제시

### III-21.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및 기초학습 증진 교육 실시를 통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와 자기개발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 (장애인복지시설(단체) 2개소)  
※ 2014년도 수행주체 :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소요예산 : 40,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운영실적 지속적인 관리 및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만족도 조사) 실시

### Ⅲ-22. (사)한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놀이프로그램을 지도하여 사회활동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자립프로그램 보급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사)한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 업 량 : 1개소(40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회장 김덕홍)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3월 ~ 11월 : 중증발달장애인 줄넘기 교실 운영

### Ⅲ-23.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자

립 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활동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1개소 (사업기관 선정, 위탁 시행)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2월 ~ 3월 : 사업기관 선정
- 2015년 4월 ~ 12월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III-24.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장애아동의 언어·심리 및 특수 조기교육을 원하고 있으나 치료교사 및 공간의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대기하고 있는 아동을 연차적으로 해소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시행령 제44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사 지원
- 사업량 : 5개소 · 10명
  - 제주도복지관(4, 분관1포함), 탐라복지관(2), 서귀포복지관(2), 시각복지관(1), 농아복지관(1)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외 4개소
- 소요예산 : 2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에 대한 사전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III-25.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민의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취약·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재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재활 의료 서비스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실현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동문로 1(구 서귀여중)
- 사 업 량 : 1개소 · 4명
- 사업내용 : 조기사회복귀프로그램, 방문재활지원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17,74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월 :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안 마련
- 2015년 2월 :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수립
- 2015년 3월 : 권역거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사업단 구성 및 운영

### III-26.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여성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배양
- ※ 사업시행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1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3,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여

### III-27.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의 필요성

- 여성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배양  
※ 사업시행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여성단체 10개단체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III-28. 여성리더십 함양 사회역량 강화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최근 국제화시기에 발맞추어 여성들의 강한 리더십과 사회역량을 배양함으로써 비전 메이커로 발돋움하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리더십함양 사회역량 강화사업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1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 지도자 등 여성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 Ⅲ-29. BPW 프로그램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BPW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에서의 여성역할을 재정립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및 발전방향 모색  
※ 사업시행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BPW 프로그램 사업비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워크숍 2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BPW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Ⅲ-30.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의 필요성

-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120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 1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아동 폭력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폭력피해예방 교육사업 지속 추진으로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식개선 확산

### III-31.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및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운영기관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성폭력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실시로 사전예방 및 성관련 인지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III-32.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문화적 이질감, 언어문제 등으로 입국 후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결혼이민자 당사자 및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토대로 지역사회 통합 및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 및 취업, 다문화 이해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 운영 확대

### Ⅲ-33. 다문화가족 문화 역사 언어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의 언어, 문화, 역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유도
- 다문화가족이 제주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사회통합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 문화 역사 언어교육 운영
- 사 업 량 :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등 200명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문화 역사 언어교육, 다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Ⅲ-34.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의 재혼으로 인한 중도입국 자녀와 지역사회 및 학교부적응에 따른 학교이탈 자녀에 대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자아실현 및 목

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 교육 운영
- 사 업 량 :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 54명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중도입국자녀 및 학교이탈 자녀 대상으로 직업체험교육 등 프로그램 확대 운영

### III-35. 다문화가족 온라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다문화가정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집합 및 방문교육의 한계점 보완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 온라인 한국어 교육 지원
- 사 업 량 : 175가구
  - 다문화가정 온라인 교육에 따른 인터넷 이용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향후 추진계획

-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언어 및 문화생활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 추진

### Ⅲ-36.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 해소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유도
- 제주교육대학교 초등학교 교사 이수 과목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제주대학교 교육대 1개소, 150명
- 사업 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과목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 2015년 4월 ~ 5월
- 필수과목 지정을 위한 교육과목 개편 : 2014. 6월
- 다문화이해 교육 전공필수과목 운영 : 2015년 3월 ~ 12월

### Ⅲ-37.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인지력 등이 상대적으로 느린 장애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인권교육을 통해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예방 제고
- ※ 사업시행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지원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운영기관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인권교육 실시로 성폭력 피해 예방 강화

### III-38. 아동, 여성 안전교육문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인식개선 도모
  -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아동, 여성 안전교육 문화사업(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 위 치 : 도 일원
- 사업량 : 1개 운영기관(추후 선정)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선정 추진 : 2015년 3월
-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 : 2015년 4월 ~ 12월

### III-39.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부모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부모가 되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하는 부모가 증가함
- 결혼으로 인한 부부역할, 부모역할, 육아 실습 등 교육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사업개요

- 건 명 :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 사업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기 부부, 임신 중 부부, 영유아를 둔 부부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예비부모 아카데미 6기 운영 및 특강 실시

### III-4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사업의 필요성

-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구조 및 응급 처치 능력 제고
- ※ 사업시행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개요

- 건 명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사 업 량 : 3,500명(제주한라대학교 응급의료교육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계획 수립(2015년 1월)
  - 전문교육기관과 위탁 체결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시설 등 교육 실시

### III-41.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실 전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 사업시행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도내 응급의료기관 6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69,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III-42.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홍보 및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에이즈감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 ※ 사업시행 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사업내용 : 청소년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등 실시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에이즈 예방교육 : 30회
-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 : 2회

### III-43. 여성전문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숨은 재능을 재발견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도민의 만족도 제고 및 긍정적 공감대 형성
- 다양한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소통 공간 형성으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특강 운영

사업개요

- 사업량 : 70개 과정· 4,0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III-44.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사업의 필요성

- 의용소방대원 전문자격취득 기회 부여로 실질적인 소방 보조업무 역할 강화
- 2013.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 개정으로 전문교육 위탁 지원근거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제19조 제3항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9길 22
- 사업량 : 의용소방대원 136명 전문교육 위탁(68개 대대별 2명)
- 사업기간 : 2015년
- 소요예산 : 13,600천원

### III-45.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사업개요

- 위 치 : 도 일원
- 대 상 : 장애인
- 사업량 : 5개소(1,1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9,524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5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2015년 2월 ~
-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실시 : 2015년 3월 ~ 12월

### III-46. 고령자 정보화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고령자 인구수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사업개요

- 위 치 : 도 일원
- 대 상 : 고령자
- 사 업 량 : 2개소(48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2,4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5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2015년 2월 ~
- 고령자 정보화 집합교육 실시 : 2015년 3월 ~ 12월

### III-47.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들이 정보화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사업개요

- 위 치 : 도 일원
- 대 상 : 결혼이민자
- 사 업 량 : 1개소(6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6,2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5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2015년 2월 ~
- 고령자 정보화 집합교육 실시 : 2015년 3월 ~ 12월

### III-48. 제2새마을운동 핵심리더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2의 새마을운동을 과거 빈곤탈출의 "근면, 자조, 협동"의 자립운동에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을 더해서 국민통합을 이끄는 공동체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핵심리더 교육 시행을 통하여 미래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및 지도자 소명의식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2월 ~ 11월(기당 2박 3일)
  - ※ 14개 과정 / 16천여명(우리도 : 70명)
- 장 소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경기도 성남시 소재)
- 소요예산 : 15,000천원
- 내 용
  - 국민정신 함양운동과정(지역사회 핵심리더, 지역사회청년과정 등)
  - 공동체만들기 운동과정(지역공동체 활성화, 행복공동체돌보미과정 등)

### III-49.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적응 및 직업준비 교육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의 교류, 통일안보 의식함양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내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 이탈주민의 소외감 해소, 심리·안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마련  
※ 시행근거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하나센터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교류사업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행
- 2015년 1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

### III-50. 성인문해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동 시행령 제72조

#### 사업개요

- 건 명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실시
  -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반, 문해반, 백일장, 시화전 등

※ 성인문해교육 수요집단

- ① 20세 이상 초등·중학수준 미만 저학력 성인
  - ② 비문해자(19세 이상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문장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성인)
  - ③ 반문해자(19세 이상 낱글자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나 문장이해 능력은 거의 없는 성인)
  - ④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결혼이민자, 한국국적취득자 등 외국인 주민
- 위 치 : 문해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2개소(동려평생학교, 서귀포오석학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성인문예교육수요자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 III-51.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사업의 필요성

- UN기구나 국제 구호단체에서 활동하는 UNGO 실무자들의 경험을 도민들에게 직접 알려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고양
- 전 세계 평화시민활동가로 뛰어다니는 국내 실천가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보고 느낀 평화, 인권 실천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하는 강좌

사업개요

- 건 명 : 평화와 인권의 도시를 위한 제주도민 교육지원사업
- 위 치 : 제주CBS본부(제주시 연동 271-1)
- 사업량 : 평화와 인권을 위한 도민강좌
  - 강사진 : UNGO, NGO / - 대상 : 청소년·대학생·도민 등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중
- 소요예산 : 30,000천원

### III-52. 생애주기별 ·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년층(직무교육), 중·장년층(생애전환기 교육), 노년층(삶의 질 향상) 등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인, 저소득층, 저학력자, 경력단절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道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도내 평생학습기관
- 사 업 량 :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 소요예산 : 2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대상별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도민참여 확대 유도

### III-53.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도민 체감의 지원 사업 추진으로 학교 활성화 및 도·농 교육격차 해소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사업개요

- 위 치 : 읍·면지역 고등학교
- 사 업 량 : 10개교(일반 6, 특성화고 3, 일반+특성화 1)  
\* 애월고, 한림고, 세화고, 대정고, 대정여고, 표선고,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함덕고, 성산고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7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예산 확보 : 2015년 1월
- 학교별 사업비 교부 : 2015년 2월
- 학교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6년 2월 ~ 2016년 3월

### III-54. 보물섬 교육공동체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

- 보물섬교육공동체의 교육기관 중 어린이문화학교 굴렁쇠(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토요학교)의 이전 계획에 따른 냉난방시설 등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물섬 교육공동체
- 사업량 : 교육환경개선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기대효과

- 보물섬교육공동체의 교육기관 중 어린이문화학교 굴렁쇠(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및 토요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 III-55.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非)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지역 학생들의 꿈과 적성중심의 진로교육 및 창의 인성을 갖춘 리더 양성 등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및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내 유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멘토링 및 전문가 특강, 캠프 등을 진행하고자 함

사업개요

- 대 상 : 도내 청소년 및 학부모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업비 : 600,0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非)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실시, 진로교육과정 개발, 창의와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개발, 체험활동 및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진로와 적성에 맞는 목표설정 훈련
- 제주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역량을 갖춘 리더 인재양성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III-56. 외국인 제주(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영어교육도시 정주 외국인들이 생활인으로서 제주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및 제주(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 문화 및 자연유산 등 자랑거리 홍보

사업개요

- 건 명 : 외국인 제주(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 사업내용 : 제주(한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한국어 및 제주(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3월
- 한국어 및 제주(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3월 ~ 12월

### III-57.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체험교육연수

사업의 필요성

- 전세버스는 관광 및 통학버스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고, 관광제주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사고예방이 필수적임
-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 현장 실습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위험 대처능력 향상으로 관광객 안전 확보 및 국제적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 교육 · 연수
- 대 상 : 교통사고 다발자 및 통학 전세버스 등 운전자 250명
- 교육시기 : 2015년 2월 ~ 3월, 7월
- 지원방법 : 교육비 70% 및 연수비 50% 지원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센터 교육 및 대중교통 선진지 연수
- 교육내용
  - 대형버스의 자동차 특성 이해 및 운행시 유의사항
  - 도로환경별 주행코스 운행실습 등 안전운행 요령 교육
- 사 업 비 : 137,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차적 확대 시행을 통한 안전운행 능력 향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고율 매년 3% 감축계획
- 대중교통 선진지 안전관리 및 친절서비스 벤치마킹 연수기회 제공

### III-58. 화물자동차운전자 안전운행체험교육연수

사업의 필요성

- 각종 화물을 적재하고 제주와 육지 간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나 도내에는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실정임
- 도내 화물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운행 습관 조성 및 사고 대응력 향상 등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도모
  - ※ 사업시행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교통안전법 제56조

사업개요

- 건 명 : 화물자동차 운전자 안전운행 체험 교육연수
- 교육대상 : 도내 화물운수종사자
- 교육인원 : 50명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안전운전체험센터 및 화물운송 선진지 연수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0월
- 소요예산 : 45,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화물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 현장 교육 및 연수 추진
- 화물운수종사자 교통법규 준수 및 사고예방 관련 교육 실시

### III-59. 국민운동단체 중앙단위 자원봉사자 육성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국민운동단체 주관의 중앙연수원 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석하는 회원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단체 운영 내실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위 치 : 제주도 오현길 14(이도1동)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국민운동단체 중앙연수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실비 지원

### III-60.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로서 운영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배양 강화
- 주민자치실천사례, 회의기법, 프로그램기획 등 실무 위주의 권역별 맞춤형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운영으로 주체적 학습역량 강화하여 지역내 구심체역할 정립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로 행정시에서 주민자치학교 운영, 도 사업 예산 행정시 편성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자치학교 운영
- 위 치 : 26개 읍면동주민자치센터
- 사 업 량 : 정기교육 30회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1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및 정기교육 운영 계획 수립 : 2015년 1월 ~ 2월
-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정기교육 사업 추진 : 2015년 3월 ~ 11월

### Ⅲ-61.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특색 있는 주민자치구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주민 화합공동체 조성, 귀농·귀촌인, 은퇴이주민 등의 안정적 제주 생활 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참여계층 다변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량 : 26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2015년 1월~2월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선정 및 센터별 사업 추진 : 2015년 3~10월
- 특화프로그램 사업결과보고 및 우수센터 연말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 2015년 12월

### III-62.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토요일 돌봄 연계 서비스를 시행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다양한 토요일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토요일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위 치 : 제주도 일주서로 7774(노형동) 1318 해피존더블어숲지역아동센터외 19개소
- 사 업 량 : 17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및 공백 없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상시 지도 및 지원

### III-63.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특화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여 주민생활서비스 만족도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 위 치 : 제주도 관내
- 사 업 량 : 특화프로그램 7개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3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특화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결정 : 2015년 1월 ~ 2월
-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2015년 3월 ~ 12월

### Ⅲ-64.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문화적·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방학 기간 동안 외부 체험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위 치 : 제주도 일주서로 7774(노형동) 1318 해피존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외 41개소
- 사 업 량 : 42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이용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 Ⅲ-65.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당별 순회교육을 통한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방안강구 및 노인복지시책 반영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0개소 경로당(274개 경로당중 격년 실시)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운영방법 : 년1회 (경로당별 순회방문)

- 사업내용 : 순회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소요예산 : 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 계획 수립(2014년 순회교육 미 실시 경로당 대상)

### III-66. 제주시 실버밴드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음악활동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실버밴드에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사기진작
- ※ 사업시행 근거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사업개요

- 사업량 : 제주시 실버밴드 1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2월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행사, 경로당 방문 연주회 개최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 계획

- 2015년 2월 : 운영 보조금 교부 및 노인행사, 경로당 방문 연주회 개최

### III-67. 노인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교양, 오락 등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사업개요

- 사업량 : 13개소 노인교실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운영 프로그램 : 일반교양, 건강강좌, 지역경제, 시사상식, 취미생활 등
- 운영방법 : 주 1회 이상 / 1일 2시간

- 소요예산 : 6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2월중 : 노인교실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3월중 :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 Ⅲ-68. 장애인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취업 등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1급 ~ 6급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1·2종 보통 500천원, 대형 350천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가구의 자립기반 마련

### Ⅲ-69.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학생 및 성폭력 취약계층 대상으로 성교육 파견 의뢰가 증가하여 장애인 특성상 반복과 지속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전담 운영체계가 절실히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6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 사 업 량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1개소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여성폭력 전담상담 직원 및 현장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여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 및 특수학교 및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하여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실시
- 장애인 대상 성교육에 따른 교구교안 제작 및 장애인 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 III-70.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가정·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의 보수 교육비 지원으로 상담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 사업량 : 여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8개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200천원

향후계획

- 여성폭력종사자교육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지원 : 2015년 1월중

### III-7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 위 치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등 4개소
- 사 업 량 : 방과후 아카데미 4개소(직영 3개소, 위탁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644,084천원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성장 도모

### Ⅲ-72.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21-1(건입동)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내
- 사 업 량 :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7,712천원

향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Ⅲ-73.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가족이 다함께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별빛누리공원 운영의 다양성 추구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별빛누리공원
- 사업량 :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가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1월 ~ 2월
- 가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3월 ~ 5월(상반기), 9월 ~ 11월(하반기)

### III-74. 귀농인 창업 실습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4조(귀농인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읍면동 농어촌지역
- 사업량 : 5농가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2015년 1월중
- 사업시행 및 보조금 교부 : 2014년 12월까지

### III-75. 마을발전 마을별 리더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마을 리더 역량 강화를 통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동력 기틀 마련
- 마을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이끌어 갈 리더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마을발전 마을별 리더교육 운영
- 사업량 : 전 마을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마을 선정 : 2015년 1월 ~ 2월
- 마을리더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2015년 2월 ~ 10월

### Ⅲ-76.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역량사업

사업의 필요성

-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이 부족한 마을, 공모사업 등을 준비 중인 마을에 대한 교육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경관개선,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현장포럼 실시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역량사업
- 사업량 : 전 마을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63,52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현장포럼 및 주민역량 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 : 2015년 1월 ~ 10월
- 사업 분석 및 평가 : 2015년 11월 ~ 12월

### Ⅲ-77.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능력향상,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진흥 프로그램 등 지역특성과 수요자 욕구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사업개요

- 대 상 :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내 용 : 읍면동별 지역특성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 특화프로그램 발굴 : 2015년 2월
- 주민자치기능 특화프로그램 확정·운영 : 2015년 3월 ~ 12월

### Ⅲ-7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소외계층(거주외국인·정착주민) 대상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대 상 :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주민자치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Ⅲ-79. 귀농귀촌 정착 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 대상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마인드 함양 및 정착률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사업개요

- 대 상 : 2010년 1월 1일 이후 서귀포시 귀농귀촌인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7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시 정착 귀농귀촌인 교육 신청 접수 : 2015년 1월
-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2015년 2월 ~ 12월

### III-80. 소외계층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소년과 우수 대학생을 결연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력을 일깨워줌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지역의 우수한 대학생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공헌 및 학비 지원 기회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소외계층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소재 중학교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11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 학습지도, 진로 및 고충상담 등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2월

### III-81. 2015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청소년들에게 토론 교육 및 실습 경험 제공으로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 훈련 및 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 사업기간 : 방학 기간 중 4일
- 소요예산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5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5월

### III-82.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 4060 은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세상은 날로 변화감에 따라 '인생이모작' 설계를 통하여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정을 부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업량 : 관내 퇴직(예정)자 4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2015년 1월
- 위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2015년 2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2015년 3월 ~ 12월

### III-83.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로당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역할수행 및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2014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 지침(도)

사업개요

- 건 명 :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 사 업 량 : 관내 경로당 25개소
- 지원기준 : 개소 당 800천원 범위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최소경비 지원
- 소요예산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2월 중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파악 및 선정 후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지원

### III-8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언어발달 촉진도모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초석마련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서로 55번길 2.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 업 량 : 언어발달지도사 2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4,757천원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확대 제공

### Ⅲ-85. 읍면별 찾아가는 맞춤형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서로 55번길 2.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6,9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읍면실정에 맞는 특화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발굴 운영

### Ⅲ-86.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자질 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사업개요

- 사 업 량 : 직영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 청소년수련관 (2개소) : 서귀포시, 대정
  -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 : 남원, 동홍, 신산, 안덕, 표선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의 욕구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화 도모

### Ⅲ-87.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민간(위탁)운영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자질 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사업개요

- 사업량 : 민간(위탁)운영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
- 지원대상 : 서귀포시, 송산, 하효, 법환, 강정, 예래청소년문화의집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의 욕구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화 도모

### Ⅲ-88.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영 수련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직영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 청소년수련관 (2개소) : 서귀포시, 대정
  -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 : 남원, 동홍, 신산, 안덕, 표선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1,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5일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토요 프로그램 기획·운영

### III-89. 청소년문화의집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사업개요

- 대상시설 : 민간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  
· 서귀포시, 송산, 하효, 대륜, 강정, 예래청소년문화의집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5일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각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토요 프로그램 기획·운영

### III-90.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으로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체험형태의 성교육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 인식은 물론, 정확하고 올바른 성(性) 지식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사업개요

- 사업량 : 청소년 성문화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6,13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확대 및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Ⅲ-91. 초등학력인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 18세 이상인 성인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 부여

사업개요

- 대 상 :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 18세 이상인 성인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 업 비 : 14,340천원
- 사업주관 :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설치·지정 기관 운영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운영 : 3월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컨설팅 지원 : 5월
- 2016년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계획수립 : 12월

## 제 4 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 IV-1.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전국 제품박람회 참석을 통한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도외 홍보 활성화
- 사회적기업 전국 세미나, 교육 참석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대표자 역량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의 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조례 12조

### 사업개요

- 건 명 : 사회적기업 교육(전국 제품박람회, 세미나 등) 여비 지원
- 위 치 : 도내 사회적기업 대상
- 사 업 량 : 사회적기업 세미나, 교육, 제품박람회 행사 참석 지원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 경제 판로확대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지속 홍보

## IV-2. 제주 사회적경제 공감체험학교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착한소비자 발굴·육성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유도 및 미래의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2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사회적경제 공감체험학교 교육과정 1식(10개학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주관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사회적경제 공감체험학교 추진계획 수립 : 2015년 1월
- 2015년 사회적경제 공감체험학교 신청접수 : 2015년 3월~

### IV-3.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도민으로서 청정제주의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 이해 및 1차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도민들에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사회활동 참여 및 평생학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1개과정 1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세부계획 수립 : 1과정 100명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교육강사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 3월 ~ 11월

### IV-4.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연찬회 및 현장교육

사업의 필요성

- 도심 소비자들에게 제주의 청정 농특산물 홍보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활동의욕 강화로 새로운 농업기술 조기전파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

사업개요

- 건 명 :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연찬회 및 현장교육 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0회(품목별 단체)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새로운 농업정보 세미나 및 청정제주 농·특산물 홍보 및 관측활동 등

#### IV-5. 전통식문화계승 활동 교육

사업의 필요성

- 한국형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으로 향토자원의 우수성 확산 및 미래가치창출 도모
- 제주의 식문화와 식생활 체험교육을 통한 올바른 먹을거리 홍보 및 농업·농촌의 가치 증대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업량 : 5개 과정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2015년 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의 독특한 전통식문화 및 로컬푸드 활용 음식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제주전통음식 매뉴얼 개발을 통한 지역식문화 홍보와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 촉진 도모

#### IV-6.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전통음식 및 식문화 계승활동을 통한 전통식문화 우수성 확산
- 향토음식,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사업개요

- 위 치 : 동부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12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사업내용 : 전통식문화 계승 교육 및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등

향후 추진계획

-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을 통한 지역 식문화 전문가 양성

#### IV-7.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동부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0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 실습재료 구입

향후 추진계획

-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 확대추진 : 1,500명

#### IV-8. 전통식문화 계승 활동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전통음식 및 식문화 계승활동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 식문화 우수성 확산
-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활동을 통한 지역 식문화 전문가 양성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사업내용 : 농촌 식생활 체험, 향토음식 경연, 로컬푸드 운동 등 전통 식문화교육 및 계승 활동 추진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농촌 식생활 체험교육 4회 추진
- 2016년 :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 IV-9.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지도자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에게 미래 과학정책 및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갖춘 지역사회 생활과학지도자 양성
- 과학의 중요성 및 과학문화 마인드 확산을 통하여 국·도정의 과학정책을 일관성 있게 홍보
- ※ 사업시행근거 : 과학기술법제30조, 과학기술조례제2조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3월 ~ 12월 \*상·하반기 운영(30회 강좌운영)
- 대 상 : 희망도민 80명
- 위탁운영 :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교육방법 : 과학의 중요성 이론 강의, 과학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
- 운 영 : 국내 과학관련 유명인사 초빙 특강
- 소요예산 : 7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생활과학지도자과정 수강생 모집, 신청 및 개강: 2015년 3월
- 2015년도 생활과학지도자과정 수료식: 2015년 12월

#### IV-10.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식생활의 서구화, 산업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따른 식문화의 변화로 아침 밥을 먹지 않는 가정과 외식가정이 증가 실정
- 유치원,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습관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올바른 식문화 정착 필요
- ※ 사업시행근거 : 식생활 교육 지원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2,800천원
- 사업내용 : 텃밭체험, 농어촌체험, 체험학교 등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2015년 1월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2015년 3월 ~ 12월

### IV-11. 제주 7대 향토음식 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 향토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도내 향토음식업소 종사자 및 도민 대상 중심으로 제주7대 향토음식 요리교실 운영
- 향토음식의 발굴, 보전, 관광 상품화하여 도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

사업개요

- 사업량 : 40명/2기(기당 2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제2기로 운영)
- 소요예산 : 13,400천원
- 사업내용 : 향토음식 교실운영에 따른 재료비, 강사료 등 지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향토음식교실 교육계획 수립 : 2015년 1월
- 2015년 향토음식교실 참가자 공모 : 2015년 2월

### IV-12.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사업의 필요성

- 최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확대에 따라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안전교육 필요
-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및 안전교육으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농어촌 민박사업자 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4,592천원
- 사업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 사업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계획 수립 : 2015년 1월 ~ 2월
-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 2015년 3월 ~ 12월

#### IV-13. 어촌지도자 교육 훈련

사업의 필요성

- 어촌·수산업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 양성 및 어업인의 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도내 어촌계장 등)
- 사 업 량 : 어촌지도자 교육 지원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62,71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어촌지도자 교육 : 3회

#### IV-14.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사업의 필요성

- 수산업경영교육을 통하여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력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 (해양수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사 업 량 : 약 60여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6년 2월
- 사 업 비 : 9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생 모집 : 2015년 1월
- 교육개장 : 2015년 3월
- 교육수료 : 2016년 2월

#### IV-15. 외국인 선원 교육 훈련

사업의 필요성

- 최근 도내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선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 지원을 통한 어선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 지원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사업개요

- 건 명 : 외국인선원 교육 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 사 업 량 :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015년 2월
- 사업자선정 : 2015년 3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2015년 4월
- 완료 및 정산 : 2015년 12월

## IV-16.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생태체험학습

### 사업의 필요성

- 제주바다를 정화, 보전하여 관광자원 기반육성과 청소년들에게 제주를 지키는 안내자 육성 및 연안환경보호 모니터링 요원 확보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생태학습체험 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내용 : 연안정화활동, 청소년 백일장, 교육과 탐사, 주민계도활동 등
- 사업대상 : (사)제주바다사랑실천협의회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소요예산 : 23,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 2015년 2월
- 착공 및 준공 : 2015년 2월 ~ 12월

## IV-17. 미술관 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도민의 문화수준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미술관 대학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행사운영경비임

### 사업개요

- 건 명 : 미술관 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시 1100로 2894-78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0월
- 소요예산 : 12,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제3기 미술관 대학 운영계획 마련 : 2015년 2월
- 수강생 모집공고 및 대상자 확정 : 2015년 3월

- 제3기 미술관 대학 운영 : 2015년 4월부터

#### IV-18. 미술관 문화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관람객들의 전시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 및 역할 수행
- 미술과 소통하는 창의적 교육공간 실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 사업개요

- 건 명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1100로 2894-78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소요예산 : 70,000천원
- 내 용 : 어린이 미술학교 : 3월 ~ 11월(토, 일)  
전시연계 프로그램운영 : 연중  
소외계층 문화나눔 프로그램 운영 : 연 4회  
미술관 체험행사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계획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 : 11월까지
-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수립 : 11월 ~ 12월
-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 IV-19. 제주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제주어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제주도내 학생 (제주어 교육 희망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주 관 : 사)제주어보전회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어 보전·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IV-20. 제주어 이해와 표현 전문 과정

사업의 필요성

- 2010년 12월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의 언어(4단계)로 분류되면서 제주어 사용 인구 확대를 통한 보전 방안이 필요함.
- 이에 제주어 능력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어 보급에 필요한 체계적·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어 이해와 표현 전문(기초) 과정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40명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9월
- 주 관 : 사)제주어 보전회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문화의집 등에서 제주어 보급 확산 활동 전개
- 초등학생 대상 제주어 보급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대상 중급 이상 제주어 강의 등

#### IV-21. 제주어 청소년 교육 및 동영상 제작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어 교육 및 교재와 동영상을 제작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제주어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어 청소년 교육 및 동영상 제작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제주도내 학생 (제주어 교육 희망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주 관 : 사)제주어보전회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어 보전·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IV-22.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 가정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제26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저소득층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주 관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제주문화예술재단)
- 소요예산 : 19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원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및 평가 워크숍 추진
- 지원사업자별 컨설팅 및 간담회 추진
- 2015년 사업자 공모, 심사, 선정
- 2015년 사업 추진

## IV-23.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국악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해 학교 음악 교육의 질적 수준제고 및 국악 전공자들이 교육현장 참여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4조~제1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중·고
- 사 업 량 : 초·중·고 94개교 교과과목 및 특별과목, 예술강사 38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주 관 :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소요예산 : 241,76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 사업주관 단체 선정(문화부) 및 2015 대상학교선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강사선발 및 강사 연수

## IV-24.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제주문화원형을 활용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 및 제주문화 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문화콘텐츠 활성화 도모해야 할 필요성 대두
- ※ 사업시행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제14조, 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지원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지원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1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2월 문화콘텐츠활용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계획에 따른 자문
- 2015년 3월 ~ 10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시행
- 2015년 11월 결과보고
- 2015년 11월 ~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수료에 따른 인력양성 및 활성화 추진

#### IV-25. 갯전시관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갯일(양태)의 보전과 육성을 위해 건립된 갯전시관 홍보물 제작으로 전통공예의 가치 홍보 및 대중인식 기반 확대
- 지속적인 무형문화재 교육을 통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전승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제31조 및 33조

사업개요

- 건 명 : 갯전시관 홍보물 제작 및 교육활동비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갯전시관
- 사 업 량 : 갯전시관 홍보물 제작 및 교육활동비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전통 갯일의 대중인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IV-26.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주 탐라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굴함으로서 제주 전통문화전승보급을 위한 탐라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사회교육과정 개설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탐라문화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 사 업 량 : 도민 100여명 대상 강좌 교재비 및 강사비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추진 : 2015년 2월 ~ 12월

#### IV-27.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학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도민들에게 유구한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제주 역사·문화의 이해와 문화향유 기회제공
- 김만덕기념관(객주터 재현)과 구도심을 연계한 문화의 거리 체험탐방, 탐라순력도 체험기행을 통해 제주의 고유한 전통과 자연을 이해하는 시민강좌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2015년 제주학 박물관아카데미
- 사 업 량 : 박물관아카데미 1식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1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일반 도민들이 우리지역의 역사·자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제주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
-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주 역사·자연 교육으로 발전

#### IV-28. 미래 꿈나무 골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사계절 골프 가능한 자연환경의 이점을 살린 골프 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골프꿈나무 인재육성을 위한 골프 아카데미 개설 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미래 꿈나무 골프 아카데미 위탁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5 ~ 8월
- 대 상 : 초·중·고 학생 희망자 60명
- 사업장소 : 제주대학교 골프아카데미 연습장
- 운영방법 : 제주대학교 경영사업단 골프아카데미에 위탁 운영  
- 3개 반으로 편성하여 1일 2시간씩 1주 4회
- 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대학교와 계약체결 및 대상자모집 : 3월 ~ 4월
- 사업시행 : 5월말

#### IV-29.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일반인들의 여가 선용과 체육활동의 생활화
- 생활체육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건강한 가정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 사업시행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 제5조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 위 치 : 도내 일원
- 사 업 량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2개 프로그램, 16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14. 12월 : 도생활체육회, 시생활체육회 프로그램 운영 안 수립 및 제출
- 2015년 3 ~ 12월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IV-30. 청소년 신문활용 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신문 활용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창의력과 논리력을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신문활용 교육사업
- 사업량 : 청소년 신문활용 교육사업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2,2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청소년신문활용교육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IV-31.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이 자발적·종합적 활동인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또래간 커뮤니티 형성과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인성·사회성을 함양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동아리 지원
- 사업량 : 청소년 동아리 10여개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 IV-32.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와 호국안보의지 확산을 위하여 각 지역, 대상별로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실시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나라사랑 교육 및 안보현장 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15년 3월 1일 ~ 11월 30일
- 소요예산 : 3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 도민대상 나라사랑 교육(50회) 및 안보현장 교육 실시(1회·150명)

## IV-33. 문화교육 및 인문학 특강

###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잠재역량 개발 및 예술교육 욕구 충족 등 여성 문화예술인 육성
-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예술 활동의 참여 활성화
- 인문학 특강 운영으로 지식과 교양, 감성 함양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량 : 37개 과정 · 2,20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6,24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1개과정, 30명 (주말교육 '우리 가족 케이크 만들기')

#### IV-34. 영어방송을 통한 제주특집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아리랑 라디오는 도내 스튜디오를 개설, 2008년 7월 우리도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제주관련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 제주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협약을 통해 특집프로그램을 협찬운영 하고 있음.
  - ※ 아리랑라디오 매체 현황
    - 개 국 일: 2002년 12월
    -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 방송 스튜디오 제주소재(벤처마루내)
    - 홈페이지 회원수: 78개국 · 330만명
  - ※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라디오 방송으로 외국에 한국의 참모습 소개

##### 사업개요

- 대상매체 : 아리랑라디오(국제방송교류재단 방송채널)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12,000천원
- 홍보내용 : 아리랑라디오(영어방송)을 통하여 제주도정 소식 및 제주의 각종 행사 등을 소개

##### 향후 추진계획

- 아리랑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인 제주홍보로 전 세계인들에게 제주 인지도 제고

#### IV-35. 도민사회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긍정적인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핵심 지역리더 및 지역 활성화 교육 추진
- 도민들에게 시대적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계층별, 직능별 일터 및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테마교육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및 각 개별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수산업법 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개 교육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7,8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도민사회교육 계획 수립 : 2014. 12월

○ 2015년도 도민사회교육 운영 : 2014. 2월 ~ 11월

#### IV-36. 탐라의 얼 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탐라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론과 현장 체험연계 교육 실시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역사교육 홍보 정예화

사업개요

○ 교육인원 : 4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5년 7월(2박 3일)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탐라의 얼 아카데미 교육 계획 수립 : 2014. 12월

○ 2015년도 탐라의 얼 아카데미 교육 추진 : 2015년 7월

#### IV-37. 제주 리더스 스쿨 과정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토론과 과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정 개설

○ 새로운 국내외 정보를 습득하여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나갈 선도그룹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위탁협약서(제주도↔제주대학교)

사업개요

○ 사업량 : 1개과정 60명

○ 사업기간 : 2015년 3 ~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제주 리더스 스쿨과정 위탁협약 체결 : 2014년 12월
- 2015년도 제주 리더스 스쿨과정 운영 : 2015년 3월 ~ 12월

#### IV-38 수준별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인적기반 구축과 도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수준별 맞춤형 도민 외국어 교육 실시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영어·일본어 위탁 외국어학원
- 사 업 량 : 도민 외국어아카데미 영어·일본어과정 운영  
※ 중국어 교육은 별도계획 추진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언어별 맞춤형 외국어 위탁교육 실시 : 2015년 1월 ~ 12월

#### IV-39. 관광종사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관광업 종사 도민을 대상으로 기초회화 과정을 통한 중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중국 관광객의 불편사항으로 조사된 언어장벽 해소로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관광진흥법 제39조(교육)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7조(교육)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관광종사 도민 중국어아카데미 3,000명
- 소요예산 : 4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계획 수립 및 계약 : 2015년 1월
- 2015년도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추진 : 2015년 2월 ~ 12월

#### IV-40. 도민 법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 참여·소통을 통해 도민불편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과제 검토
- 제주특별법의 이해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 공유 및 도민 자긍심 고취
- 행정구제제도 안내 등으로 사전 위법상태 최소화 및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대 상 : 도민, 기관·단체별(여성, 운수종사자, 중소기업, 다문화가정 등)
- 교육내용 : 행정피해에 따른 대응방안, 민법·소비자보호·인허가 등 생활관련 법률 사례, 제주특별법 등
- 교육방식
  - 공중·식품위생교육, 농촌·농민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등 기회교육 시 병행 추진
  - 교육 수요자 맞춤형(교육과목, 교육장소) 강의 프로그램 운영
  - 일방적 전달방식에서 사례위주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교육효과 확대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 프로그램, 교육일정, 교육대상 선정, 강사협의 등 세부 교육계획 수립

#### IV-41. “재능으로 모다지다” 평생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성인학습자(어르신)들에게 교양강좌 및 체험중심의 교육을 전개하여 제주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함

사업개요

- 건 명 : 재능으로 모다지다 평생교육사업

- 위 치 : 사단법인 동려(제주시 광양4길 30-1)
- 사 업 량 : 인문·문화예술 강좌 10개 등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 IV-42. 지역특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도민욕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
- 직업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특화형 프로그램 우선 지원으로 일반 교양취미성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평생교육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특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 업 량 : 평생교육기관(단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
- 공모내용
  - 4050세대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를 위한 생활적응 및 취·창업교육, 제주바로알기 인문학 강좌, 학습-고용연계, 직업능력개발 등
- 사업기간 : 2015년 1 ~ 12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도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육성

#### IV-43. 제주 『꿈, DO! Dream』 센터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지역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생 때부터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중등교육의 사교육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3년(2011~2013) 연속 수능1위로 교육열이 높은 반면 기초학력 저하 학생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높으며, 지역별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교육균형 발전에 대한 도민들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 교육여건상 급변하는 교육 환경변화 대응과 맞물려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역할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차원(지자체)의 역할을 통해 미래 지역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 건 명 :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자기주도학습역량과정, 진로교육 및 진학상담, 창의·인성 교육, 학부모역량강화 등
- 위 치 : 제주도내(공공 시설) 지역 2개소 실시
- 사업량 : 센터 설치 및 운영 2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소요예산 : 1,60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지방비 100%

향후 추진계획

- 자기주도학습 지원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 : 1월 ~
- 추진 T/F팀 구성 및 조례 제정 : 3월 ~ 5월
- 자기주도학습센터 개관 및 운영 : 7월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8월 ~ 12월

#### IV-44.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과 친환경실천의 생활화 유도하기 위해 우수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선정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및 환경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환경부)

사업개요

- 건 명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추진
- 사업량 : 13개 교육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71,43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단체 선정 통보(환경부) : 2015년 1월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단체 보조금 교부 : 2015년 3월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5년 3월 ~12월

#### IV-45.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사업의 필요성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독특한 자연환경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해 환경부 지정 양성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사업시행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사업개요

- 건 명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운영(간이양성과정)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는 유사해설 양성과정 수료자로 자연환경해설분야의 경력이 2년이상 (80시간이상)인 희망자
  - 교육시간 : 36시간(이론18, 현장13)

향후 추진계획

- 자연환경해설사 간이양성 과정 민간위탁 추진 : 2015년 2월
- 자연환경해설사 간이양성과정 운영 : 2015년 2월~ 12월

#### IV-46.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환경문제해결 능력 배양

- 환경교육 시범도시에 맞는 생활 속 친환경실천을 위한 중점 환경교육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및 자연 환경  
연수원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환경부)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2월
- 소요예산 : 285,714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015년 3월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5년 3~12월

#### IV-47. 친환경 사회체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를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인 체제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 함
  - 주요 핵심분야 : 폐기물관리, 교통, 에너지, 기업녹색경영
  -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은 향후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 시스템을 통해 세계 환경수도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임
- ※ 사업시행 근거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 (교육·홍보)

사업개요

- 건 명 : 친환경 사회체제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업내용 : 주요 핵심분야(폐기물관리, 교통, 에너지, 기업녹색경영)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생활 실천 프로그램 개발 완료 : 2015년 2월
  -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가정 등 범도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2월 ~ 12월
  - 분야별 주관 기관·단체(사업체) 등 선정
  - 분야별 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성과 등 평가
- 사업성과 등을 반영한 친환경 실천 제도(조례, 지침 등) 마련 : 2016년

#### IV-48. 생태환경 체험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직접체험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함양 도모
- 생태보전 교육 및 환경정화활동을 통한 청정 제주 지속 유지 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48조

사업개요

- 건 명 : 생태환경 체험교육 및 정화활동 지원
- 사 업 량 : 생태환경체험 교육 등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생태환경체험교육 및 정화활동 등 지원

#### IV-49.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려니숲길)

사업의 필요성

- 새로운 개념의 숲길 생태체험을 통해 산림자원 가치 제고 및 자연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

사업개요

- 건 명 :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 위 치 : 조천읍 교래리 ~ 표선면 가시리, 남원읍 한남리

- 사업량 :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5년 5월 ~ 6월
- 사업비 : 2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려니 숲길) 행사가 세계자연유산홍보 효과가 높으므로 매년 행사를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의 숲길체험 관광객 유치

#### IV-50.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고품격 산림서비스 실천
- 관광객 및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라생태숲 홍보기능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생태숲 지정·관리지침 제15조(생태숲의 관리)

사업개요

- 건 명 :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516로 2596번지 한라생태숲 내
- 사업량 : 탐방프로그램 강사료 지출 등 5건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효과적인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생태체험 학습효과 거양
- 탐방객 및 관광객들의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탐방 프로그램 개발

#### IV-51.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주도할 마을리더 및 전문 인력 육성 ⇒ 『전문 인력 Pool』 운영
-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주민 스스로의 마을발전 주도 시스템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 대 상 : 마을만들기 참여지역 리더 및 희망주민 등
- 사업내용 : 마을만들기 기본과정, 심화과정, 마을특화과정 운영  
※ 아카데미 연간 수료인원 : 50명 범위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교육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 2014년 12월
- 단계별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교육 추진 및 수료 : 2015년 1월 ~ 12월

#### IV-52.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 등 역량부족으로 주민갈등 유발 등 사업차질
- 마을 역량단계별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성공기틀 마련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 대 상 : 제주시 전 읍면동
- 사업량 : 마을주민 리더교육, 마을자원조사, 스토리텔링, 컨설팅,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시 역량강화 사전설명회 및 사업추진 : 2015년 1월 ~ 12월

## IV-53. 취미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20개소 경로당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운영방법 : 주1~2회 운영
- 운영주체 : 읍면동별 경로당
- 소요예산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2월 중 :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수요과약 및 선정
- 2015년 3월 중 :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지원

## IV-54. 한국어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제2호

### 사업개요

- 건 명 : 한국어교육 운영
- 위 치 : 제주도 중앙로 265 6층 (이도2동, 성우빌딩)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 소요예산 : 22,262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지자체 한국어교육 수행기관 위탁 공모
- 한국어교육 사업홍보 및 신청자 모집
- 단계별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수시 평가 및 특별반 운영

#### IV-55.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제공 및 문화체험 활동 기회제공
-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성장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위 치 : 제주시 용해로 55(용담2동) 성화청소년공부방 등 12개소
- 사업량 : 청소년공부방 12개소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와 연계 공교육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건전육성 도모

#### IV-56. 제주별빛누리공원 토요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건전한 토요 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추진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별빛누리공원 토요 교육프로그램 1식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산34 제주별빛누리공원
- 사업량 : 토요 교육프로그램 4개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10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말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2015년 3월 ~ 11월

#### IV-57. 청소년 승마 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자라나는 청소년 대상 승마 체험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 승마체험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말 산업 육성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관내 초, 중, 고등학생
- 사업량 : 1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승마운동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동심과 모험심을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건강한 육체를 배양

#### IV-58. 가족사랑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부모·자녀 및 형제 등 가족이 함께하는 승마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기회 제공
- 가족 승마체험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 및 가정 내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말 산업 육성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관내 가족(부모+ 학생 등)이 1조가 되어 참여
- 사업량 : 1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가족이 함께하는 승마체험 활동을 통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육성
- 승마 운동이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힐링 레저스포츠로 정착

#### IV-59.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승마산업 발전과 승마 인구 저변확대 도모
- 승마를 통한 힐링 레저 활동으로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말 산업 육성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거주 18세이상 남,여
- 사업량 : 1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8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시민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승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 속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 IV-60.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동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사업개요

- 대 상 : 제주시 지역 청소년
- 사 업 량
  - 생활과학교실 운영 : 읍·면지역 5개반·4기 및 동지역 2개반·4기 운영
  - 생활과학교실 재료비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기 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사업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1월 : 사업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2015년 2월 ~ 12월 : 생활과학교실 운영

#### IV-61. 글로벌·문화아카데미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 시민대학은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 서귀포 평생학습의 산실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통해 개인 능력 지속 개발 및 지역인재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 시민대학 운영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2개 과정 · 1,500명(12회)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대행 협약 및 계획수립 : 2015년 2월

## IV-62. 충효·한문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방학기간 중 경로당에서 지역노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한문 및 전통예절 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및 전통미풍 양속 계승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2014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 지침(도)

### 사업개요

- 건 명 : 충효·한문교실 운영
- 사 업 량 : 관내 경로당 15개소
- 지원기준 : 개소 당 500천원 / 반기(년 1,000천원)
- 사업기간 : 2015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 소요예산 : 1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충효·한문교실 운영 지원

## IV-63. 한국어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서로 55번길 2.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22,262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한국어교육 심화과정 및 중도입국자녀과정 교육 운영

#### IV-64. 서귀포문화원 문화동아리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시 관내 문화동아리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 및 전문가 지원을 통한 문화 도시 조성의 기반 마련

사업개요

- 건 명 : 문화동아리 지원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동아리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 소요예산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 분야별 워크숍 : 2015년 2월 ~ 3월
- 동아리 활동 지원 추진 : 2015년 3월 ~ 12월

#### IV-65.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사 업 량 : 음악, 악기, 미술, 국악 등 장르별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4월~10월
- 소요예산 : 27,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1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3월 ~ 12월

#### IV-66. 승마아카데미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말 산업을 친환경 녹색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승마교실 운영을 통한 승마 인구 저변확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 사업량 : 초·중·고급반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자체재원 25,000, 자부담 25,000)
- 사업내용 : 승마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승마기본훈련 및 이론교육, 승마지도 및 조련, 마필 사양관리, 승마대회 출전경비 등

향후 추진계획

- 승마대중화를 통한 승마레저문화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 도모
- 승마지도자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말 산업 선도 지역 육성

#### IV-67.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추진방향

- 가정-학교-지역을 아우르는 학교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통하여 독서문화 활동의 필요사항 지원

운영개요

- 사업대상 : 청소년,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월 31일
- 사업비 : 216,898천원
- 사업주관 :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한수폴도서관, 동녘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문화 함양을 위한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내 주요 도서관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불균형 해소 기여

## IV-68. 학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심 역할 수행
-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의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대 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2월
- 사업비 : 학교별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
- 사업주관 : 초·중·고·특수학교
- 주요내용 : 1교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도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 2월
- 2015년도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알림 : 3월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기관 : 1월 ~ 12월
  - 학교 : 4월 ~ 12월
-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결과 수합 : 12월

---

부 부

---



**【부록 1】**

**평생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3.12.30>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13.12.12.30>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9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  
 · 교육과정 · 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  
 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5.22>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

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

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시행일 : 2014년7.1] 제33조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1.28>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년1.28>

[제목개정 2014년1.28]

##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제8장 보 칙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제목개정 2013.5.22]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 2015년1.29] 제45조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일 : 2014.7.1] 제46조

부칙 <제12339호, 2014년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2】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09-03-18 조례 제 459호  
(일부개정) 2011-08-17 조례 제 777호  
(일부개정) 2012-10-17 조례 제 943호  
(일부개정) 2013-05-15 조례 제 1031호

관리책임부서 : 인재개발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제16조·제21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7>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3조(위원)**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17.>

③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

**제4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8.17, 2012.10.1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7>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2.10.17.>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  
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4.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  
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10.17.>

**제10조의2(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 문해  
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 문해교육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성인 문해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5.15.]

-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0.17.,2013.5.15.>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및 연계사업 운영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9.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0.17.>
- ⑤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조직 및 시설 등의 지정자격과 구비서류 등 지정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2012.10.17.>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되거나 지정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0.17.>

⑦ 도지사는 진흥원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10.17.>

[제목개정 2012.10.17.]

**제11조의2(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7.]

**제11조의3(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1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평생학습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시에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중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8.17>]

**제14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8.17]

**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토요일
  2. 평생학습관의 소독,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6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7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일 및 교육 개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17]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사자 및 그 가족
1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감면승인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1. 시설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2. 교육신청자가 교육 수강일 전에 교육취소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1.8.17]

**제20조(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11.8.17>]

<별표 1>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제주시평생학습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건입동 533번지)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서귀동 321-10번지)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7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금 액	비 고
강 당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 교육, 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교육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 과정별	1명 / 1월	10,000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보육위탁료(제20조 관련)

□ 보육위탁료

구 분	금 액	비 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	12,000원	

※ 적용기준

1.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 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위원용)

청렴서약서(제3조제3항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총괄** **홍정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

**공동  
참여**

**강순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담당  
**장성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주무관  
**송미영** 제주시 평생학습 담당  
**오영란** 서귀포시 평생학습 담당  
**고남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평생교육 사무관

---

**간사** **고연주**  
**연구보조** **오용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

---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시행계획

---

발행인 원희룡  
발행일 2015년 1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전화) 064-710-3822 팩스) 064-710-2709  
홈페이지 : [www.jeju.go.kr](http://www.jeju.go.kr)

---